#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편람

2023. 8.



# 목 차 • •

제1장 평가개요1
1. 평가목적 및 근거1
2. 평가대상2
3. 추진체계 및 평가방법3
4. 2023년 평가 추진방향4
5. 평가 지표의 구성6
6. 평가 결과의 활용(환류)9
제2장 평가지표 세부내용10
1. 관리체계 영역10
2. 개방 영역23
3. 활용 영역
4. 품질 영역49
5. 기타(감점)51
제3장 평가 유의사항54
1. 평가대상기관 유형별 점수 환산 방법54
2. 근거자료 등록55
3. 평가 결과 확인55
4. 증빙자료 인정 기준일55
제4장 2022년도 우수사례 예시56
제5장 FAQ ······59
첨부
1. 2023년 평가대상 기관 목록60
2. 전년대비 지표 변경사항66
3. 평가 제출자료 체크리스트67
4. 정성평가 작성양식69

## ◆ 주요 변경사항[1/4] • ◆

○ 2023년 4월 19일 배포된 「**'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편람」 중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지표	변경 전(`23.4.19 배포)	변경 후	페이지
평가대상 기관	기관유형 기관 수 중앙 45 지자체 광역 17 (243) 기초 226 교육 17 공기업 32 공공 준정부 55 (394) 기타공공 260 지방공기업 47 계 699	기관유형 기관 수 중앙 45 지자체 광역 17 (243) 기초 226 교육 17 공기업 32 공공 준정부 55 (392) 기타공공 259 지방공기업 46 계 697	p.2
	<u>강원도, 경상북도 군위군</u>	광역시 군위군	~p.65
평가결과 환류 배점	○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배점 5점) ○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배점 7점) ○ 공공기관 경영평가(배점 0.5점*) * '국민소통' - '공공데이터 공유· 개방·활용' 비계량 단일 지표에 반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기관 보유 데이터 공유·개방 노력과 성과' 평가	○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배점 5점) ○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배점 5점) ○ 공공기관 경영평가(배점 0.5점*)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배점 0.3점**) * '공공데이터 공유·개방·활용'(0.5점)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노력 및 성과'(0.3점)	p.9, p59
개방 □-① 메타관리 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률(8점) 세부지표 해당 ☞ [1등급 사례] 생략 ☞ [5등급 사례] 생략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률(8점) 세부지표 해당 ☞ [1등급 사례] 생략 ☞ [5등급 사례] 생략 ☞ [N/A 처리] '23년도 개방계획이 0건인 경우 ※ 단 기관의자에 따라 개방계획 변경을 통해 1개 이상의 테이블을 추기발굴 하여 '23년도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진행한 경우 '23년도 개방이행률에 따라 이행률 점수 획득 가능	p.25

## ◆ 주요 변경사항(2/4) ◆ ●

○ 2023년 4월 19일 배포된 「**'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편람」 중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0/1		102 101 20	
개방 III-① 메타관리 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세부지표 N/A 처리(전년도 중장기 개방 계획 미제출 기관·신규 평가대상 기관에 해당) - '22.12.31 기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미설치 기관, 메타정보 블라인드 기관, 메타관리시스템 제외 기관 ○유의사항 - 1) ~ 2)에서 9.30까지 공공 데이터 등록신청은 완료하였 으나 품질 문제로 포털 개방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개방 미이행으로 간주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세부지표 N/A 처리(전년도 중장기 개방 계획 미제출 기관·신규 평가대상 기관에 해당) - '22.12.31 기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미설치 기관, 메타관리시스템 제외 기관, 기관 및 사업단 검토 결과 개방 가능한 테이블이 없는 경우 ○유의사항 - 참고사항 1) 및 4)에서 공공데이터 등록신청은 완료하였으나 품질 문제로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이행실적 등록 관리시스템의 이행실적 등록 승인이 9월 30일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개방 미이행으로 간주 ※ 2023년 개방이행 예정 및 조기개방 데이터를 9월 30일까지 목록등록관리 시스템의 이행실적 등록 하기 위해서는, 포털 등록개방검토,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이행실적 등록 승인 기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8월	p.26
개방 回-②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불인정 사례 - '23년 이전에 개방한 데이터,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중장기 개방계획('23~'25년)에 포함된 데이터 및 관련 활동을 실적 으로 제출한 경우	31일까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및 개방 완료해야 함	p.29, p.71
활용	○ 불인정 사례 - 개별기관 자체 포털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개방수요 발굴, 활용개선 등의 의견수렴 활동 (온라인 설문조사 및 간담화인터뷰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기관보유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 개방수요 발굴, 활용개선 등의 의견수렴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	○ 불인정 사례  - 의견수렴 활동(온라인 설문조사 및 간담회·인터뷰·자문 등) 실적에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되는데이터에 대한 내용(개방수요 발굴, 활용개선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예, 개별기관 자체 포털 개방데이터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실적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공공데이터포털 외의 채널을 통한의견수렴 활동이라도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데이터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이 포함될 경우실적으로 인정	p.48

## ◆ 주요 변경사항(3/4) ◆ ●

○ 2023년 7월 18일 배포된 「'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편람(수정본)」 중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관계계 [I-(1) 공공데이터 <i>츠</i> 지기바	○ 평가 착안사항③(조직·인력) - (중앙행정기관) 중앙부처 데이터 전담부서 보유 여부(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 데이터 전담부서에 '데이터' 명칭 사용 여부, 기관에 배정된 정원의 데이터 전담 인력 활용 여부 - (그외 기관) 기관(본부 기준) 내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조직보유 여부 및 해당 인력의 공공데이터 업무 전담 수행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22~'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공공데이터 인력의 실제 배정 여부	○ 평가 착안사항③(조직·인력) - (조직·인력 보유) 데이터 전담부서에 '데이터' 명칭 사용 (중앙행정기관 해당), 데이터 전담부서 보유, 기관 배정 정원의 데이터 전담 인력 활용 여부 - (인력 배정) 지자체 中 '22년 기준인건비가 반영된 기관의 경우, 공공데이터 인력이 실제 배정되었는지 여부 ※ "기준인건비 확보분 충원 현 황"을 현행화하여 '23.8.31.까지 행안부에 공문으로 제출 필요	p.13, p.14	
추진기반 조성 노력	○ [증빙자료 제출]  ※ 조직·인력 관련 증빙자료 : (중앙) 기관별 직제시행규칙(부서명), 해당부서 정원배정표 및 업무분장표(내부결재문서 포함) 제출 / (지자체) 해당부서 정원배정표(기준인건비 반영 전후) 및 업무분장표(내부결재문서 포함) 제출	○ [증빙자료 제출]  ※ 조직·인력 관련 증빙자료 : 기관별 직제시행규칙(중앙행정기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지자체), 조직도 및 직제규정(그 외 기관), 해당부서 업무분장표(전체 기관, 내부 결재문서 포함)  ※ 인력 배정 관련 증빙자료 : "기준인건비 확보분 충원 현황"을 현행화하여 '23.8.31.까지 행안부에 공문으로 제출 필요		
개방 □-④ 개방데이터 오픈포맷	o 오픈포맷 비중 산식 (수정 전) 포털에 개방된오픈포맷데이 포털에 개방중이거나 개방검토요청한 o 오픈포맷 비중 산식 (수정 후) 포털에 개방된오픈포맷데이 포털에 개방검토요청한	전체데이터수(파일, <i>API</i> ) × 100(%)	p.32, p.34	
바중	o 불인정 사례 - (5등급) 2013년 1월 이후 현재 까지 개방데이터가 0개인 경우	ㅇ <u>(N/A처리)</u> 2013년 1월 이후 현재 까지 개방데이터가 0개인 경우		

## • • 주요 변경사항(4/4) • •

○ 2023년 7월 18일 배포된 「'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편람(수정본)」 중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제공주기 준수율 산식 (수정 전) ㅇ 제공주기 준수율 산식 (수정 후) 차기등록예정일이 '23.8.31 이후인 목록수 (파일)  $\overline{\text{ 포틸에 개방중이거나 개방검토요청한 전체목록수(파일)}} imes 100(\%)$ 개방 **Ⅲ**-(5) p.35, 개방데이터 p.37 제공주기 준수율 ㅇ 5등급 처리 o (N/A처리) 2013년 1월 이후 현재 - 2013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개 까지 개방데이터가 0개인 경우 방데이터가 0개인 경우 [제출 필요] 집계기간(2022.8.4. ~ 2023.8.3.) 동안 제공신청 접수 건 중 2023.8.31.까지 직접 제공 완료 [제출 불필요] "직접제공에 대한 한 데이터 목록 및 2023.9.30.까지 처리결과 집계자료"를 평가시스템에 기타(감점)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한 샘플 공지(9.13.) 예정 V-(1) 데이터 목록 ※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내 등록내역 직접 제공 - 작성양식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p.52 (샘플데이터 등)이 누락됐을 경우 데이터의 실태평가시스템 > 실적 제출 >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서 정정 또는 포털 기타(감점) 영역 > 해당지표 공지한 집계자료에 미개방 사유 미개방 (5-1)에서 다운로드 후 실적작성 작성 후 평가시스템(5-1 지표)에 제출(~10.4.) 및 실태평가시스템에 업로드 필요 \* 작성 양식은 2023.9.13. 이후 다운로드 가능

## • • '22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

##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00 11 11 110 202	대 평가」의 무요 면경 자양은 다음	1
'22년 지표	변경 전(`22년)	변경 후(`23년)	페이지
관리체계 띱-① 추진기반 조성 노력	<ul> <li>기관장 및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의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을 평가(5점, 기초·기타공공 7점)</li> </ul>	<ul> <li>● 배점: 5점(기초지방공공·기타공공·교육행정 7점)</li> <li>● 평가 착안사항 개선</li> <li>- 예산은 당해년도 집행 내역만 평가</li> <li>- 기초·기타공공·교육행정기관은 부기관장 추진의지 인정</li> </ul>	p.10 ~ p.14
개방 囯-①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 기관 전체 보유 DB수 대비 개별 DB 메타데이터 현행화율의 평균값을 평가(8점)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지표로 이관	-
개방 皿-② 개방계획 수립	○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5점)	<ul> <li>○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수립 및 이행률(□-①, 10점)</li> <li>- (계획 기제출기관) 개방이행률(8점), 차기년도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2점)</li> <li>- (계획 미제출기관) 개방계획 수립(8점), 차기년도 개방계획 조기 이행(2점)</li> <li>○ 교육행정기관은 평가 제외</li> </ul>	p.24 ~ p.27
개방 四-③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ul> <li>수요에 기반한 활용성 있고 내용적으로 충실한 신규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을 평가(10점)</li> <li>기타공공기관은 평가 제외</li> </ul>	<ul> <li>○ 지표 코드 변경: □-③ → □-②</li> <li>평가 착안사항 개선</li> <li>- 시계열 서비스 발굴·개방, 비정형·비식별화 데이터 개방, 개방 저해 개별법령 정비</li> <li>-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의 중점데이터 개방 노력·실적 추가</li> <li>○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은 평가 제외</li> </ul>	p.28 ~ p.30
개방 回-④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건에 대한 적기 처리 여부를 평가(3점)	<ul><li>○ 지표 코드 변경 : 四-④ → □-③</li><li>○ 배점 : 3점(기타공공기관 5점)</li></ul>	p.31 ~ p.32
개방 四-⑥ 공공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중인 데이터의 제공주기 준수 여부를 평가(6점)	○ 지표 코드 변경 : 四-⑥ → 四-⑤ ○ 배점 : 6점(기타공공기관 7점) ○ 부정행위(0점 처리) 사례 추가 - 파일명만 변경·등록하거나 평가 모수를 줄일 목적으로 주기성 데이터를 1회성 수시 데이터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p.36 ~ p.38
활용 Ⅲ-①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ul> <li>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노력·실적을 평가(8점, 기초지자체 7점)</li> <li>기타공공기관은 평가 제외</li> </ul>	○ 배점 : 8점(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7점) ○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은 평가 제외	p.39 ~ p.40
활용 Ⅲ-② 활용지원 노력 및 실적	<ul> <li>○ 기관에서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국민·기업 대상 활용지원 노력 및 실적을 평가(6점, 기초지자체 3점)</li> <li>○ 기타공공기관은 평가 제외</li> </ul>	<ul> <li> 배점 : 7점(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4점)</li> <li> 평가 착안사항 개선</li> <li> 리빙랩, 민관협력 파트너십 운영 등 추가</li> <li> 유관·상위기관과 공동행사 개최 인정</li> <li>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은 평가 제외</li> </ul>	p.42 ~ p.44
활용 Ⅲ-④ 수요자 의견수렴	<ul><li>사용자 대상 수요조사 채널운영 여부를 평가(3점)</li></ul>	○ 배점 : 4점(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5점) ○ 개방·활용을 위한 사용자 대상 의견수렴 채널운영 및 의견수렴 활동 여부를 평가	p.48 ~ p.49
품질 🏻	○ 품질관리 체계 수립 및 품질관리 활동, 품질진단 및 개선 활동 수행 여부를 평가(35점)	<ul> <li>배점: 35점/기타공공기관 28점, 교육행정기관 20점)</li> <li>영역별 비중 조정</li> <li>관리체계(32% → 40%), 값 관리(68% → 60%)</li> <li>품질관리 대상 DB 확대</li> <li>보유DB의 50%(최대 30개→35개)</li> <li>고유·지원 업무 구분없이 전체 지표적용</li> <li>진단평기수행 절차별 기한 준수여부 지표 추가(2점)</li> </ul>	p.50 ~ p.51
기타 ☑-①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직접 제공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샘플 파일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로 미개방 시 감점 (-1점)	○ 직접 제공한 원본데이터가 PDF라도 공공데이터포털에 샘플 파일 형태(요약 데이터*)로 미개방 시 감점 * 오픈포맷(hwpx 등)으로 등록·개방	p.52 ~ p.53

## I 평가개요

## 1. 평가목적 및 근거

- (목적)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환류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 (근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공공데이터법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 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운영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 운영 실태
  -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 실태
  -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 4. 법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의 등록 실태
  -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실태
  - 6.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 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2. 평가대상

- **총 697개 기관**(중앙 45, 지자체 243, 교육행정 17, 공공 392)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 2023년 정부업무평가(국무조정실) 대상이 아닌 국무조정실과 대검찰청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미실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2023년 공공기관 지정」고시('23.1.30., 기재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광역자치단체 산하)
  - ※ 지방공기업 현황('22.12.31. 기준, 행안부)
  - ※ 직영기업인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제외(광역자치단체에 포함하여 평가)
- < '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대상 기관 세부내역 >

						공공기	관(392)		
구분	중앙 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243)			의 운영에 ※ 공공(중앙		지방 공기업법 ※ 공공(지방)	계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	기관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관수 (개)	45	17	226	17	32	55	259	46	697

#### < 참고 : 기관 폐지·신설, 통합, 소속변경, 내역 >

- ① 국가보훈처(중앙) 폐지 → 국가보훈부(중앙) 신설 및 사무승계
- ② 재외동포재단(기타공공기관) 폐지
- ③ 경상북도 군위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 ④ 부산시설공단 및 부산스포원 → 부산시설공단(지방공기업)으로 통합

## 3. 추진체계 및 평가방법

### ○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총괄 · 조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평가 실무전담 및 운영 전반 관리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확정

#### ○ 평가방법

- (실적기간) '22. 9. 1. ~ '23. 8. 31.
  - ※ 단, 품질영역은 '22.11.1.~'23.10.31. 실적을 평가
  - ※ '23.9.~'23.12. 기간의 실적은 차기년도('24년)에 평가
- (실적제출) 각 기관\*의 지표별 실적 등록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시스템을 통해 등록
  -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 (교육행정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연구정보원·교육원·연수원 등 소속·직속 기관의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
  -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자동 집계되는 지표는 평가대상 기관의 실적 제출 불필요
- (실적인정) 공식결과 문서(내부결재·메모보고 등을 통한 보고내용·일자, 보고자·결재자 소속, 직급·보직명 등의 객관적 증빙) 없이 계획만 제출 시 실적 불인정

### ○ 평가절차 및 일정

- 1차 평가(평가단) → 이의신청(기관) → 2차 평가(평가단) → 이<sup>의신청 반영여부</sup> 최종 확인(기관)
  - ※ 품질영역 : 보유 DB 현행화 및 평가대상 DB선정(기관) → 자체평가(기관) 및 상시 점검·확인(행안부·NIA) → 이의신청(기관) →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 이의신청 반영여부 최종 확인(기관)

####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세부일정(안) >

주요내용	일정
· (평가단/행안부) 2023년 평가지표 설계·개선	~′23.4.
· (행안부) 2023년 평가지표 설명회(온라인) 개최	′23.4.
· (행안부) 2023년 평가 근거자료 등록절차 안내	′23.8.
· (평가대상 기관) 2023년 평가 근거자료 등록	'23.9.1.~ '23.10.4 <sup>*</sup> .
· (평가단/행안부) 2023년 평가 실시	′23.10.~ ′23.12.
· (평가단/행안부) 1차 평가 결과(정량지표에 한함) 공개 및 이의제기 신청 건에 대한 검토·재평가 · (평가대상기관) 1차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이의신청 반영여부 확인	′23.11.
· (평가단/행안부) 기관별 평가결과(등급) 확정	′23.12.
· (평가대상기관) 평가결과(등급 및 평가의견) 사전 공개	′24.1.
· (평가단/행안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공표	′24.3.

<sup>\*</sup> 실태평가시스템에 실적 등록이 필요한 지표(II-1), II-2, II-2, II-2, III-1, III-2, III-2, III-1, III-2, III-1, III-1,

## 4. 2023년 평가 추진방향

#### < 기본 방향 >

- ▶ 국민수요에 부합하는 보다 많은 데이터 개방을 위해 **평가대상 확대** 및 기관 수준 편차 개선을 위해 **맞춤형 평가체계 강화**
- ▶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지표를 신설**하고, 디지털 플랫폼정부 실현방안,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 **정부 주요 시책 평가**
- 국민수요에 부합하는 보다 많은 데이터 개방을 위해 평가대상 확대
  - 전체 기타공공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을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단계적 개방 확대 추진
    - ※ '23년 시범평가(평가항목 조정, 결과 미공개 등), '24년부터 평가결과 공개 검토
- 기관유형별 수준 편차 개선을 위한 맞춤형 평가체계 강화
  - (평가대상 기관유형 세분화) 기관유형별 수준 및 여건을 고려한 평가를 위해 대상기관 유형 세분화\* 및 유형별 맞춤형 배점 설계

- \* (기존) ①중앙, ②광역지자체, ③기초지자체, ④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 업, ⑤기타공공기관 등 5개 유형 ⇒ (개선) ①중앙, ②광역지자체, ③기초지자체, ④공기업·준정부기관, ⑤지방 공기업, ⑥기타공공기관, ⑦교육행정기관 등 7개 유형
- (시범평가) 기타공공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은 기관 여건을 감안하여 16개 지표에서 각각 13개\*, 12개\*\* 지표를 평가
  - \* 기타공공기관 : 3개 정성지표(②-2, ③-1, ③-2) 제외
- \*\* 교육행정기관 : 3개 정성지표(②-2, ③-1, ③-2) 및 1개 정량지표(②-1) 제외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 주요 신규 시책과제 추진을 촉진
  - (개방)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중장기 개방계획' 관련 이행지표 신설\*, 시계열·비정형·비식별화 데이터 개방, 개방 저해 개별법령 정비 등 평가
    - \* 평가기준 : 당해년도 개방계획 이행, 차기년도 개방계획의 당해년도 조기 이행, 차기년도 개방계획 수립 적극성 등
  - (활용) 민관 파트너십 운영, 데이터 리빙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주요 시책과제 평가 강화 및 활용분야 배점 상향(<sup>'22년</sup>20점 →<sup>'23년</sup>23점)
-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확대·강화 및 진단체계 개선
  - 품질진단·평가 수행 절차별 기한 준수 여부 지표\* 추가하고, 고유· 지원업무 등 업무 유형 구분없이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적용\*\*
    - \* 기관별 보유 DB 현행화 및 대상 DB 선정 일정 준수 여부를 평가에 반영
  - \*\* (고유업무) 전체영역 적용, (지원업무) 관리체계 영역 제외→전체영역 적용
  - 품질인증 획득 DB와 전년도 품질수준 우수 DB는 지표를 부분 적용하여 평가부담 감소 및 지속가능한 품질관리 체계정착 유도

## 5. 평가지표의 구성

○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제공현황 등 **공공데이터** 全 **영역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감점)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

< '2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지표				기관	<u></u> 유			
영역	지표명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공 (지방)		교육 행정
	□-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정성	5	5	7	5	7	7	7
관리 체계	□-②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정량	1	1	2	1	2	3	3
	□-③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 교육 참여	정량	1	1	2	1	2	3	3
	四-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률	정량	10	10	10	10	10	10	-
	Ⅲ-②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정성	10	10	10	10	10	-	-
개방	Ⅲ-③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	정량	3	3	3	3	3	5	3
	□-④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정량	6	6	6	6	6	7	6
	Ⅲ-⑤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정량	6	6	6	6	6	7	6
	▥-①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정성	8	8	7	8	7	-	-
활용	Ⅲ-②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 및 실적	정성	7	7	4	7	4	-	-
20	□-③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4	4	4	4	4	5	2
	▥-④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정량	4	4	4	4	4	5	5
	<ul><li>☑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li><li>*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결과</li></ul>	정량	35	35	35	35	35	28	20
품질	-① 데이터 관리체계	(정량)	14	14	14	14	14	11	8
	-② 데이터 값 관리	(정량)	21	21	21	21	21	17	12
	☑-① 직접제공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미개방					-1			
기타 (감점)	1								
	☑-③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정량	-1 / 건						

※ 공공(중앙) :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공(지방) : 지방공기업

## < 평가영역별 평가 세부내용 >

영역	평가 세부내용
되 관리체계(7)	□-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정성, 5, 기초·공공(지방)·기타·교육행정 7) ○ 기관장의 정책추진 의지, (데이터)전담부서·전담인력 배치, 예산집행 등 단순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초·공공(지방)(11) /기타공공·교육행정	<ul> <li>□-②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1, 기초·공공(지방) 2, 기타·교육행정 3)</li> <li>○ 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공공데이터 담당인력 및 현업부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교육을 시행하였는지 평가</li> </ul>
(13)	<ul> <li>□-③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 교육 참여 (1, 기초·공공(지방) 2, 기타·교육행정 3)</li> <li>○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각 담당인력이 행정안전부 제공 공공데이터 이러닝 공통교육에 참여하였는지 평가</li> </ul>
回 개방(35) ※ 기타공공(29)/ 교육행정(15)	□-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10)  *교육행정기관 제외  ○ 전년도에 중장기개방계획('23~'25년) 제출 여부에 따라 ①개방계획이행· 차기년도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 또는 ②개방계획 수립·차기년도 개방계획 조기이행 여부를 평가  - 개방계획 이행(조기이행 포함)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개방검토 및 개방 완료하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 '23.9.30.까지 이행 실적으로 등록·승인이 완료된 결과로 확인  - 개방계획 수립은 '23.8.31.까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로 별도 개방계획 및 목록구성 등록·승인을 완료한 실적으로 확인  □-②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정성, 10)  *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제외  ○ 수요조사에 기반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활용성 있고 내용적으로 충실한 신규데이터 발굴 및 개방 노력/성과를 평가
	□-③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 (3, 기타공공기관 5)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처리기한 내에 처리했는지 평가
	□-④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6, 기타공공기관 7) ○ 공공데이터를 오픈포맷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
	□-⑤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6, 기타공공기관 7) ○ 공공데이터 포털 내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정의 여부 및 제공주기 준수율 평가

영역	평가 세부내용
<ul><li>■ 활용(23)</li><li>※ 기초·공공(지방)</li><li>(19)/ 기타공공(10)/</li></ul>	□-①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정성, 8, 기초·공공(지방) 7)  *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제외  ○ 활용도 낮은 개방 데이터 원인 분석,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활용도 제고 계획 수립·시행, 기 개방된 데이터의 변경·정비를 통한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평가  □-②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 및 실적 (정성, 7, 기초·공공(지방) 4)  *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제외  ○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장려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디지털 약자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사회현안 해결, 창업을 지원한 노력 및 실적 평가
교육행정(7)	□-③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4, 기타공공기관 5, 교육행정기관 2) ○ 데이터 오류신고를 처리기한 내에 처리했는지 평가 □-④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4,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 5) ○ 신규데이터 개방수요 발굴, 개방 중인 데이터의 활용도 파악, 활용개선
<ul><li>☑ 품질(35)</li><li>※ 기타공공(28)/</li><li>교육행정(20)</li></ul>	등을 위한 의견수렴 채널 운영 및 의견수렴 활동 여부  ID-① 데이터 관리체계 (14, 기타공공기관 11, 교육행정기관 8)  ID 품질관리계획수립·이행,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데이터 표준·구조 및 연계 관리 수준  ID -② 데이터 값 관리 (21, 기타공공기관 17, 교육행정기관 12)  ID -② 공공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및 조치(오류율), 데이터 품질 오류 분석 및
<ul><li>☑ 기타</li><li>(감점)</li></ul>	문제점 개선 등  □ ① 직접제공 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 미개방(-1)  ○ 공공데이터포털에 원본데이터를 개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신청인에게 직접 제공한 경우는, 목록등록관리시스템('데이터 등록/현황'>'파일 데이터 등록' 메뉴)에 '샘플 파일 등록' 형태로 등록 및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해야 하며 포털 미개방 비율에 따라 감점 처리(직접제공 데이터가 없는 경우 감점 없음)  * PDF 자료라도 샘플 파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PDF 형태가 아닌 오픈 포맷(hwpx 등)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단, 샘플 파일로 개방 시 저작권법 침해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평가 모수에서 제외)
	<ul><li>☑-②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미수행(-1 / 건)</li><li>☑-③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1 / 건)</li></ul>

## 6. 평가결과의 활용(환류)

○ 평가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 분류

평가등급	우수	보통	미흡
종합점수	8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 ※ 우수, 보통 등급별 점수 하한선은 변동 가능
- 평가결과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기관별 평가등급을 대외적으로 공표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표창(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인센티브<sup>\*</sup> 수여 예정
  - \* (참고) '22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지급 완료('23.6.26.)
- 공공분야 각종 평가지표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반영
  -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배점 5점)
  -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배점 5점)
  - 공공기관 경영평가(배점 0.5점\*)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배점 0.3점\*\*)
    - \* '공공데이터 공유·개방·활용'(0.5점),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노력 및 성과'(0.3점)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미수행' 감점을 받은 기관의 경우 종합점수에 관계없이 포상 및 인센티브 수여기관에서 제외

## 평가지표 세부내용

### < 지표별 구성 개요 >

구성항목	설명
정의	- 평가지표의 정의
대상	- 평가를 받는 기관의 유형(중앙,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등 7개 유형으로 분류)
배점	- 지표별 배점(품질영역 제외 1점~10점으로 구성, 감점 별도)
 설명	-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 취지 및 근거 안내
 기준	- 평가기준(등급)별 세부내용
근거자료 (증빙자료)	- 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업무기록, 문서 등 - 지표별 평가등급 확인 방법 등
참고사항	- 불인정 사례에 대한 예시 - N/A(해당지표 평가 제외)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 1. 관리체계 영역

### < 평가목적 >

공공데이터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관의 기반 구축 노력 등을 평가

## ○「Ⅱ 관리체계 - 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지표

정의	기관의 공공데이터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장 및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의 노력을 평가한다.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배점	5점 ※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은 7점

■ 원활한 공공데이터 정책추진을 위해, 기관장,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기관의 데이터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추진기반 조성 노력]

- 기관장은 공공데이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조직(책임자, 실무자 등)을 구성하고, 수행하는 공공데이터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과 책임을 정의한다.
- 기관장은 공공데이터 정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장 주재 이행점검 회의 등을 통하여 기관장의 추진 의지가 정책 이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은 법령(공공데이터법 시행령 13조의 임명조건)에 따른 자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관장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의 임명 변경 등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 기관장은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 전문인력을 임명하여야 한다.
  - ※ 전문인력: 데이터 전문 직위, 데이터 관련 자격증 보유, 데이터 관련 학위 취득,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2년 이상), 민간경력 특채, 전문임기제 다급 이상 및 다급 이상에 준하는 사람
- 기관장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를 임명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은 기관의 핵심 가치 및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파악하고 매년 생성되는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기관장,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의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 

설명

### <기초지자체·지방공기업·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적용>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장, 공공데이터	1등급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노력이 매우 우수함	(7점)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장, 공공데이터	2등급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노력이 우수함	(5.3점)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장, 공공데이터	3등급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노력이 보통임	(3.5점)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장, 공공데이터	4등급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노력이 미흡함	(1.8점)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장, 공공데이터	5등급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노력이 매우 미흡함	(0점)

기준

### <그 외 모든 기관 적용>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장, 공공데이터	1등급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노력이 매우 우수함	(5점)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장, 공공데이터	2등급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노력이 우수함	(3.8점)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장, 공공데이터	3등급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노력이 보통임	(2.5점)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장, 공공데이터	4등급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노력이 미흡함	(1.3점)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장, 공공데이터	5등급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노력이 매우 미흡함	(0점)

#### ☞ 평가 착안사항

- ① (전담자)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공공데이터포털 (기관 홈페이지 포함) 등록 여부
- ☞ [기관 담당자 등록 확인방법] 목록등록관리시스템(all.data.go.kr)
  - o 공공데이터 목록등록관리 > 업무담당자관리
- ② (예산) `23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 집행 내역 여부

####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 유형 분류]

- (전면개방) 원천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비식별화 데이터, 지역·사회 현안 데이터,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과제 관련 개방 등
- (활용 활성화) 지역·사회 현안 해결 지원, 민간협력·파트너십, 기업 역량 및 창업·성장지원 등
- (품질개선) 품질관리, 개방표준, 데이터 정비, 오픈포맷 비중 확대 등
- (기반강화) 법제도 정비,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구성, 교육 등 역량 강화, 공공데이터 생성·개방·활용 기반 마련 등

### 근거자료 (증빙자료)

#### ③ 조직·인력

- (조직·인력 보유) 데이터 전담부서에 '데이터' 명칭 사용(중앙행정기관 해당), 데이터 전담부서 보유, 기관 배정 정원의 데이터 전담 인력 활용 여부
- **(인력 배정) 지자체** 中 '22년 **기준인건비가 반영된 기관**의 경우, 공공데이터 **인력이 실제 배정**\* 되었는지 여부
  - ※ "기준인건비 확보분 충원 현황"을 현행화하여 '23.8.31.까지 행안부에 공문으로 제출 필요
- ④ (계획수립) 조직의 핵심 가치 및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 전략 수립 수준
- ③ (성과점검)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주재 회의 개최, 컨설팅 수행 등을 통한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성과 점검 노력
- ⑥ (기관장 추진의지) 기관장 주재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점검 회의 개최, 공공데이터 계획 및 실적의 기관장 보고, 기관장의 공공데이터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노력
  - ※ 기초자치단체·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의 경우는 부기관장 추진 의지도 인정

## ☞ [보고서 제출] 정성평가를 위한 별도 보고서 양식[별첨 01,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시스템\*(이하, 평가시스템: all.data.go.kr > 운영실태평가 > 평가시스템으로 이동)에서 다운로드] 작성 및 제출 필요 ☞ [증빙자료 제출] 정성평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공식 증빙자료를 제출(기관장 주재 이행점검 회의 계획 및 결과보고서(기관장 지시사항 포함), 근거자료 공공데이터 계획 및 실적 기관장 보고자료, 기관장 지시사항의 이행 실적/성과, 제공책임관 (증빙자료) 주재 회의 계획 및 결과보고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관련 홈페이지 공표 내역, 실무담당자 중 전문인력 증빙자료, 공공데이터 예산 집행 실적 등) ※ 조직·인력 관련 증빙자료: 기관별 직제시행규칙(중앙행정기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지자체), 조직도 및 직제규정(그 외 기관), 해당부서 업무분장표(전체 기관, 내부 결재문서 포함) ※ 인력 배정 관련 증빙자료 : "기준인건비 확보분 충원 현황"을 현행화하여 '23.8.31.까지 행안부에 공문으로 제출 필요 ☞ **[불인정 사례]** 실적 기준일(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 내의 실적이 아닐 경우 ※ 회의, 컨설팅 등 계획 및 결과보고가 공식자료(결재문서, 공문 등)가 아니거나 계획만 제출하고 참고사항 결과 보고가 없는 경우,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지 않으면 불인정 ☞ [평가방법]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의 절대평가(1점~100점) 점수로 평가 ※ 별도의 등급별 비율이 없음

## ○「Ⅱ 관리체계 - ②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지표

정의	기관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공공데이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을 적절하게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방공기업,
배점	1점 ※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2점,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	<b>관은 3점</b>
설명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담당인력(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및 공공데이터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현업부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리 (품질관리 포함)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업부서 간 정기적 소통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적용>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① (자체 교육 실시) 공공데이터 교육* ② (소속기관 포함)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	
	③ (의사결정권자 포함) 의사결정권자(보직자 기준 과장급 이상)의 교육* * 행안부 제공 이러닝 공통교육(①-③)을 제외한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 법제도, 관리·개방·활용·품질) 관련한 대면·비대면·이러닝 교육	
	① 자체 교육 2회 실시, ② 소속기관 포함,	1등급
	③ 의사결정권자 포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점)
	① 자체 교육 1회 실시, ② 소속기관 포함, ③ 의사결정권자 포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기준	OR	2등급
	① 자체 교육 2회 실시, ② 소속기관 포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0.8점)
	OR │ ① 자체 교육 2회 실시, ③ 의사결정권자 포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자체 교육 2의 일자, ③ 의자일이면서 모임 표현일 모구 중국인 영구 ① 자체 교육 2회 실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OR	3등급
	① 자체 교육 1회 실시, ② 소속기관 포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0.6점)
	OR (1) 자체 교육 1회 실시, (3) 의사결정권자 포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
		4등급
	① 자체 교육 1회 실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0.4점)
	자체 교육 미실시	5등급
		(0점)

### <광역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적용>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① (자체 교육 실시) 공공데이터 교육*	
② (의사결정권자 포함) 의사결정권자(보직자 기준 과장급 이상)의 교육*	참여(최소 1회)
* 행안부 제공 이러닝 공통교육(田-③)을 제외한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 법제도, 관리·개방·활용·품질) 관련한 대면·비대면·이러닝 교육	공데이터(정책,
① 자체 교육 2회 실시, ② 의사결정권자 교육 포함 요건을 모두	1등급
충족한 경우	(1점)
① 자체 교육 1회 실시, ② 의사결정권자 교육 포함 요건을 모두	2등급
충족한 경우	(0.8점)
① 자체 교육 2회 실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3등급 (0.6점)
① 자체 교육 1회 실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4등급 (0.4점)
자체 교육 미실시	5등급 (0점)

### 기준

### <기초지자체·지방공기업 적용>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① (자체 교육 실시) 공공데이터 교육*	
② (의사결정권자 포함) 의사결정권자(보직자 기준 과장급 이상)의 교육*	참여(최소 1회)
* 행안부 제공 이러닝 공통교육(II-③)을 제외한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 법제도, 관리·개방·활용·품질) 관련한 대면·비대면·이러닝 교육	·공데이터(정책,
① 자체 교육 2회 실시, ② 의사결정권자 교육 포함 요건을 모두	1등급
충족한 경우	(2점)
① 자체 교육 1회 실시, ② 의사결정권자 교육 포함 요건을 모두	2등급
충족한 경우	(1.6점)
① 자체 교육 2회 실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3등급 (1.2점)
① 자체 교육 1회 실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4등급 (0.8점)
자체 교육 미실시	5등급 (0점)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적용>	
기준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① (자체 교육 실시) 공공데이터 교육* ② (의사결정권자 포함) 의사결정권자(보직자 기준 과장급 이상)의 교육* * 행안부 제공 이러닝 공통교육(II-③)을 제외한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 법제도, 관리·개방·활용·품질) 관련한 대면·비대면·이러닝 교육	
	① 자체 교육 2회 실시, ② 의사결정권자 교육 포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3점)
	① 자체 교육 1회 실시, ② 의사결정권자 교육 포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등급 (2.4점)
	① 자체 교육 2회 실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3등급 (1.8점)
	① 자체 교육 1회 실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4등급 (1.2점)
	자체 교육 미실시	5등급 (0점)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리·품질 관련 자체교육 훈련 공식(결	재문서, 공문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교육자료 포함)	
근거자료	- 소속기관(중앙행정기관만 해당) 및 교육참석자(의사결정권자, 실무담당	자 및 공공데이터
(증빙자료)	현업부서 내부 직원) 등 교육대상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증빙자료(교육수료증 또는 교육 참석 획	<b>낚인증</b> )
	※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비대면/이러닝 교육 진행 증빙자료도 인정할 계획이 교육 진행한 내부 보고자료 등 증빙자료 제출	며, 비대면/이러닝
	☞ 불인정 사례	
	- 교육 대상이 실무담당자만으로 구성된 경우(현업부서 내부 직원(	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이거나 기관 소속이 아닌 <mark>직원(인턴 직원, 내부 정보시스</mark>	.템 운영·유지보수
	업체 직원 등)만으로 구성된 경우	
참고사항	- 자체교육 수료 여부 증빙이 불가한 교육자료 서면 회람, 유튜	·브 교육, 기관
	내 교육자료 단체메일 발송, 현장 교육 화면 덤프 및 참석지	서명 자료만
	제출하는 등의 교육내용·참여자·교육시간·교육이수 여부가 공 증빙되지 않는 경우	·심적으로

- 행정·공공기관(기관 자체 또는 타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교육이 아닌 경우
- 빅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교육, 일반적인 정보화 교육, 사업관리 교육, 설명회, 컨퍼런스(제4차 산업혁명 전반에 대한 설명) 등
  -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기관 설명회 실적도 불인정
- 의사결정권자의 참석 여부는 증빙자료(교육수료증 또는 교육 참석 확인증)로 확인되어야 함
- ※ 의사결정권자의 직급 및 이름이 증빙자료로 확인 되어야함
- '자체교육 훈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공식적인 문서(보고, 결재 등)가 아닌 경우 불인정

#### 참고사항

- ☞ 의사결정권자의 참석자 수는 최소 1명 이상으로 평가함
- 의사결정권자는 모든 기관에 직접 비교는 힘드나, 보직자 기준 중앙부처 4급 과장급 이상, 공공기관은 팀장급(부장급) 이상을 의미함

중앙부처 직책	공무원
실장	고위공무원단 가급 / 1급
국장	고위공무원단 나급 / 2, 3급
과장	3, 4급
담당	4~9급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5급 과장급도 의사결정권자에 포함

## ○「Ⅱ 관리체계 - ③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교육 참여」지표

정의	기관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행안부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	이터 관련
_	공통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	공기업.
대상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0 10,
배점	1점 ※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2점,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은 3점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담당 인력이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	<u>나</u> 리(품질관리
	포함)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외부 공통교육에 참여하도록 ㅎ	<b> </b> 여야 하며
설명	현업부서 간 정기적 소통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힌	다.
	- 공통 교육·훈련에는 공공데이터 담당자(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및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담당자(품질관리 수준평가 실무담당자, 평가대상DB 업무담당자)가 참여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적용>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① (공공데이터 교육) 공공데이터 담당인력(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에	한함)의
	공공데이터 공통교육* 참여	
	* 행안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이러닝 공통교육 과정(기본, 실무)	> *!·M*
	② (소속기관 참여) 소속기관 담당자의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교육 * 행안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이러닝 공통교육 과정(기본, 실무)	T = M
	③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무	담당자 및
	업무담당자의 교육* 참여	
	* 행안부가 제공하는 품질관리 역량강화 공통교육 과정(품질관리, 품질진단	
	① 공공데이터교육 2회 참여, ② 소속기관 참여	1등급
	③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1점)
기준	③ 공공데이터 교육 2회 참여, ② 소속기관 참여, ③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일부 참여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OR     ① 공공데이터 교육 2회 참여, ③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	2등급
	① ㅎㅎ데에다 교육 2되 음생, ③ 놈들근다 ㅋㅎㅎ되 교육 음생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0.8점)
	OR	(515 🛘
	① 공공데이터 교육 1회 참여, ② 소속기관 참여, ③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① 공공데이터 교육 2회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OR	
	③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257
	OR   ① 공공데이터 교육 1회 참여, ② 소속기관 참여 요건을 각각 모두	3등급 (0.6점)
	① 등등대에더 교육 1회 참여, ② 오득기진 참여 표신을 즉즉 모두      충족한 경우	(U.U'=)
	OR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① 공공데이터 교육 1회 참여, ③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일부 참여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OR ② 소속기관 참여 요건, ③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일부 참여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3등급 (0.6점)
① 공공데이터 교육 1회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OR ③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일부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4등급 (0.4점)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교육 미참여	5등급 (0점)

## <광역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적용>

세부기준	ᅙᆸ
	(세부점수)
① (공공데이터 교육) 공공데이터 담당인력(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에 한함)의
공공데이터 공통교육* 참여	
* 행안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이러닝 공통교육 과정(기본, 실무)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무	담당자 및
업무담당자의 교육* 참여	
* 행안부가 제공하는 품질관리 역량강화 공통교육 과정(품질관리, 품질진단	<del>간</del> )
① 공공데이터 교육 2회 참여,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	1등급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1점)
① 공공데이터 교육 1회 참여,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っこユ
OR	2등급
① 공공데이터 교육 2회 참여,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일부	(0.8점)
참여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① 공공데이터 교육 2회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OR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3등급
OR	(0.6점)
① 공공데이터 교육 1회 참여,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일부	` _,
참여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① 공공데이터 교육 1회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453
OR	4등급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일부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0.4점)
고고데이티 과려 고투그의 미차선	5등급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교육 미참여 	(0점)

기준

드그

#### <기초지자체·지방공기업 적용>

#### 등급 세부기준 (세부점수) ① (공공데이터 교육) 공공데이터 담당인력(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에 한함)의 공공데이터 공통교육\* 참여 \* 행안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이러닝 공통교육 과정(기본, 실무)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무담당자 및 업무담당자의 교육\* 참여 \* 행안부가 제공하는 품질관리 역량강화 공통교육 과정(품질관리, 품질진단) ① 공공데이터 교육 2회 참여,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 1등급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2점) ① 공공데이터 교육 1회 참여,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2등급 OR (1.6점) ① 공공데이터 교육 2회 참여,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일부 참여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① 공공데이터 교육 2회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3등급 OR (1.2점) ① 공공데이터 교육 1회 참여,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일부 참여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① 공공데이터 교육 1회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4등급 OR (0.8점)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5등급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교육 미참여 (0점)

####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적용>

세부기준	ᅙᆸ
***************************************	(세부점수)
① (공공데이터 교육) 공공데이터 담당인력(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에 한함)의
공공데이터 공통교육* 참여	
* 행안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이러닝 공통교육 과정(기본, 실무)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두	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의 교육* 참여	
* 행안부가 제공하는 품질관리 역량강화 공통교육 과정(품질관리, 품질진단)	
① 공공데이터 교육 2회 참여,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	1등급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3점)

### 기준

	① 공공데이터 교육 1회 참여,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OR ① 공공데이터 교육 2회 참여,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일부 참여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2등급 (2.4점)			
기준	① 공공데이터 교육 2회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OR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OR ① 공공데이터 교육 1회 참여,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일부 참여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 경우	3등급 (1.8점) 3등급 (1.8점)			
	① 공공데이터 교육 1회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OR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일부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교육 미참여	4등급 (1.2점) 5등급 (0점)			
근거자료 (증빙자료)	☞ <b>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b> (자동집계) *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포함				
	☞ 공공데이터 교육           - 참석대상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관의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전원           - 기본과정 및 실무과정 모두 이수 시 교육 2회로 인정           ☞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 참석대상은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무담당자 및 평가대상 DB 업무담당자 전원           -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은 '기준'에 있는 공공데이터 교육 2회 실적과 별개임           -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 요건'이라 함은 아래 표에서 2개(①과 ②)의 이수 기준 모두를 의미하며, ① 또는 ② 중 1개 기준은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일부 참여 요건'을 의미함				
참고사항	구분 이수기준				
	① 실무담당자 '품질관리' 영역의 교육과정 1개 이상 ② 업무담당자 '품질진단' 영역의 교육과정 1개 이상				
	□ ② 답구담증사 □ 품질산한 영역의 교육과정 기계 이정 [불인정 사례] 행안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이러닝 공통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이 아닌 경우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설명회 불인정 □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 및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 https://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운영실태평가 > 공	및 품질관리 및 품질관리 공 운영실태			

## 2. 개방 영역

## < 평가목적 >

공공데이터 저변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방 관리 노력 수준을 평가

○「□ 개방 - 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지표

정의	미개방 데이터 테이블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개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한다.	을 적극적으로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 교육행정기관은 제외		
배점	10점		
설명	<ul> <li>메타관리시스템 기반 중장기('23~'25년) 개방계획 기 제출기관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개방예정 목표치 기준으로 개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차기년도 개방예정 목표치를 초과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li> <li>메타관리시스템 기반 중장기('23~'25년) 개방계획 미제출 기관은 중장기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차기년도 개방계획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li> </ul>		
기준	<ul> <li>&lt; 전년도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기관 적용 &gt;</li> <li>■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률(8점): 기제출 중장기 개방계획의 당해년도 계획 대비 개방 이행률을 평가</li> </ul>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23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이행률이 100% 이상	1등급 (8점)	
	'23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이행률이 80% 이상 ~ 100% 미만	2등급	
		(6점)	
	'23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이행률이 60% 이상 ~ 80% 미만	3등급 (4점)	
	'23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이행률이 60% 이상 ~ 80% 미만 '23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이행률이 50% 이상 ~ 60% 미만	3등급	
		3등급 (4점) 4등급	

■ 차기년도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2점) : 기제출 중장기 개방계획의 차기년도 목표 대비 개방계획 초과 등록 정도를 평가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24년도 개방목록 제출 및 중장기 개방계획 '24년도 목표 대비	1등급
테이블 수 110% 이상 개방계획 등록	(2점)
'24년도 개방목록 제출 및 중장기 개방계획 '24년도 목표 대비	2등급
'24년도 테이블 수 90% 이상 110% 미만 개방계획 등록	(1점)
'24년도 개방목록 미제출 또는 중장기 개방계획 '24년도 목표	3등급
대비 테이블 수 90% 미만 개방계획 등록	(0점)

- ※ 개방목록 :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라 개방을 위해 작성한 목록(테이블과 1:1 또는 1:N)
  - < 전년도 중장기 개방계획 미제출\*기관·신규 평가대상 기관 적용 >
- \* 전년도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 지표 N/A 기관 포함
-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8점) :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 및 차기년도 개방목록 제출 여부를 평가

기준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중장기 개방계획('24~'25) 및 '24년 개방목록 제출	1등급 (8점)
중장기 개방계획('24~'25) 또는 '24년 개방목록 미제출	5등급 (0점)

■ 차기년도 개방계획 조기이행(2점) : 차기년도 개방계획 대비 당해년도 조기 개방 이행 정도를 평가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24년도 개방계획 대비 20% 이상 '23년도 조기 개방 이행	1등급 (2점)
'24년도 개방계획 대비 0% 초과 및 20% 미만 '23년도 조기	2등급
개방 이행	(1점)
'24년도 개방계획 대비 23년도 조기 개방 미이행(0%)	3등급 (0점)

#### <개방이행>

※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률(8점), 차기년도 개방계획 조기이행(2점) 세부지표 해당

- ☞ 실태평가시스템을 통한 제출은 불필요
-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이행율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개방검토·개방 완료하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 9월 30일까지 이행 실적으로 등록·승인이 완료된 URL로 확인

### 근거자료 (증빙자료)

#### <개방계획 수립>

- ※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8점), 차기년도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2점) 세부지표 해당
- ☞ 실태평가시스템을 통한 제출은 불필요
-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은 8월 31일까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로 별도 개방계획 및 목록구성 등록·승인이 완료된 실적으로 확인

#### <전년도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기관 적용>

- 1)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률(8점) 세부지표 해당
- [1등급 사례] '23년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상의 데이터가 100% 이상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개방검토·개방이 완료되고, 개방이행 등록현황 메뉴에 등록 개방검토가 완료된 경우
- ☞ [5등급 사례] '23년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대비 등록·개방검토를 통해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 개방이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 ☞ [N/A 처리] '23년도 개방계획이 0건인 경우
  - ※ 단, 기관 의지에 따라 개방계획 변경을 통해 1개 이상의 테이블을 추가발굴하여 '23년도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진행한 경우 '23년도 개방이행률에 따라 이행률 점수 획득 가능

#### 참고사항

- 2) 차기년도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2점)
- ☞ [1등급 사례] 기존에 제출한 '24년도 개방계획 테이블 수 대비 10% 이상의 초과된 개방계획(테이블) 제출 및 목록 구성
  - ※(예시) (기존) A기관 '24년도 개방계획(5개 테이블) 수립 →

(변경) A기관 '24년도 개방계획(6개 테이블) 변경 제출 및 개방목록 구성

- [2등급 사례] 기존에 제출한 '24년도 개방계획의 목록에서 테이블 수 대비 변경 물량이 10%(중가 또는 감소) 미만인 경우('24년 추가 개방계획을 제출하더라도 개방목록을 미작성한 경우 포함)
- ☞ [3등급 사례]
- '24년도 개방계획 테이블 수 대비 10% 이상의 초과된 개방계획을 제출하더라도 개방목록 전체를 미작성한 경우
- '24년도 개방계획 목록의 테이블 수가 기존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 8월 31일 기준 기관의 '24년도 개방계획 목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 <전년도 중장기 개방계획 미제출 기관·신규 평가대상 기관 적용>

- 3)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8점) 세부지표 해당
- ☞ [1등급 사례] 메타관리시스템에 현행화된 테이블 기준으로 기관의 개방가능한 테이블에 대한 '24~'25 개방계획(테이블) 제출 및 목록 구성이 완료된 경우
- ☞ [5등급 사례]
- 8월 31일 기준 기관의 '24~'25년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테이블)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기관의 '24~'25년도 개방계획(테이블)만 제출하고 개방목록 구성이 미완료된 경우
- ☞ [N/A 처리] '22.12.31 기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미설치 기관, 메타정보 블라인드 기관, 메타관리시스템 제외 기관, 기관 및 사업단 검토 결과 개방가능한 테이블이 없는 경우 등

#### 참고사항

#### 4) 차기년도 개방계획 조기이행(2점) 세부지표 해당

- ☞ [2등급 사례] 차기년도 개방계획을 '23년에 조기이행하여 '24년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테이블 수 대비 '23년도 조기개방 이행률이 0%는 초과하였으나 20% 미만인 경우
- ☞ [유의사항] 참고사항 1) 및 4)에서 공공데이터 등록신청은 완료하였으나 품질 문제로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이행실적 등록 승인이 9월 30일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개방 미이행으로 간주
  - ※ 2023년 개방이행 예정 및 조기개방 데이터를 9월 30일까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이행실적으로 등록 승인 완료하기 위해서는, 포털 등록 개방검토,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이행실적 등록 승인 기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8월 31일까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및 개방 완료해야 함

## ○「□ 개방 - ② 신규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지표

정의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활용성 높고 충실한 신규데이터 개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양질의 신규데이터를 개방하였는지 관련 노력 및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은 제외		
배점	10점		
설명	■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등 활용성 있고 내용적으로 충실한 신규 개방데이터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수요조사(사용자와의 협의, 의견수렴, 민간·공공 등 타기관간 상호협력 등)에 기반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활용성 있고 내용적으로 충실한 신규데이터 개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피드백 체계)와 내용을 평가한다. ※ 신규 데이터는 원천데이터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계획' 이외의 신규 개방데이터 발굴 노력 및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		
기준	## ## ## ## ## ## ## ## ## ## ## ## ##	등급 (세부점수) 1등급 (10점) 2등급 (7.5점) 3등급 (5점) 4등급 (2.5점) 5등급 (0점)	
	☞ 평가 착안사항		
근거자료 (증빙자료)	<ul> <li>추진노력 &gt;</li> <li>① 전수조사를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현재 데이터 분류 체계 및 현황 파악을 위한 노력 정도</li> <li>② 국민·기업 등 사용자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타기관(공공, 민간 등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활용성 있는 신규 개방데이터 발문* 선호하는 개방 데이터목록, 데이터목록 구성 항목 및 분류(카테고리)·세원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비식별화데이터 등 실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li> </ul>	)간 상호협력 굴 노력 정도 <b>분화 정도</b> ,	

- ③ 현황 파악 → 수요반영 → 계획수립 → 시행 추진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한 신규데이터 발굴 및 개방이행 노력 정도
- ④ (중앙행정기관만 해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의 중점데이터(디플정과제 추진에 따른 주요 데이터) 개방 노력 및 데이터 공유·개방을 저해하는 개별법령 정비 노력 정도
- ⑤ 신규데이터 발굴·개방 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노력 및 실적 등 ※ 홈페이지·SNS 등에 관련 내용 게시 및 언론보도 등

#### < 개방 실적·성과 >

- 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활용 가치가 높고 내용적으로 충실한\* 신규데이터 개방 실적
  - \* 데이터 목록별 충분한 데이터 항목을 포함하고 최대한 세분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3조제2항: 원천데이터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 처리한 데이터일 경우 이용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목록별 충분한 데이터 항목을 포함하고 최대한 세분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하여야 함)
- ② 지역·사회 현안\* 데이터 또는 공공-민간 간 융합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음성, 영상, 이미지 등) 등 신규 개방데이터의 중요성
  - \* 전염병, 미세먼지, 저출산, 디지털 격차문제 등 개방데이터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 지원 관련 정도

### ③ 데이터 추이 분석, 예측 등에 요구되는 시계열 서비스의 발굴 및 오픈API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실적

- ④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분류된 보유 목록을 개방(비식별화 등) 및 부분 개방으로 변경·개방한 실적
- ⑤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을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적극적 참여 노력\*, 개방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
  -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과제 신청,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간담회 및 설명회 참여 등
- ⑥ (중앙행정기관만 해당)「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의 중점데이터(디플정과제 추진에 따른 주요 데이터) 개방실적, 데이터 공유·개방을 저해하는 개별법령정비 실적
  - \* 기업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된 데이터, 차량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자동차등록 정보, 사망여부 진위확인, 민관 데이터플랫폼(공공데이터포털, AI허브/빅데이터플랫폼 등)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명세(목록, 소재지, 형태 등) 등
- ⑦ (공기업·준정부기관만 해당) 공공기관의 신규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TF'(행안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참여)에 협조한 실적
- ⑧ 신규데이터 발굴·개방 및 대국민 홍보 노력을 통해 뚜렷한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났는지 여부

### 근거자료 (증빙자료)

- ☞ [보고서 제출] 정성평가를 위한 별도 보고서양식(별첨 02, 실태평가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작성 및 제출 필요
- [증빙자료 제출] 기관 데이터 현황 파악을 위한 자체 전수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신규데이터 개방 수요조사(사용자와의 협의, 의견수렴, 민간·공공 등 타기관간 상호협력 계획 및 실적 등) 및 이를 반영한 신규데이터 개방 실적·성과 등
- ☞ [평가대상]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중장기 개방계획('23~'25년) 목록 이외에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신규로 개방한 데이터 및 개방 노력·실적
- ☞ [평가방법]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의 절대평가(1점~100점) 이후 기관유형별(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대평가 실시
  - ※ 상대평가 등급비율: 1등급(10%, 누적상위 10%), 2등급(20%, 누적상위 30%), 3등급(40%, 누적상위 70%), 4등급(20%, 누적상위 90%), 5등급(10%, 누적 100%)
  - ※ 등급비율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 불인정 사례

#### 참고사항

- (5등급) 실적 기준일(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 내의 신규개방 데이터가 0개인 경우
- (평가 제외) 내용적으로 충실하지 않고 활용성이 낮은 건수 부풀리기식의 신규 개방데이터 실적,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중장기 개방계획('23~'25년)에 포함된 데이터 및 관련 활동을 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공식적인 문서(보고, 결재 등)가 아닌 경우, 실적 기준일(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 내의 실적이 아닐 경우
  - \* 전수조사 시행, 회의 등 공식 결과보고에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만 인정

### ○「□ 개방 - ③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지표

정의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평가한다 (대상: 2022. 8. 4. ~ 2023. 8. 3. 동안 접수된 데이터 제공신청 접수 건, 2022.8.4 집계일, 2023.8.3은 데이터 제공신청 처리 기한을 고려함)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방공기업,
배점	3점 ※ 기타공공기관에 한하여 5점 부여	
설명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어 결정하여야 한다.	제공 여부를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 =  { 기한내신청처리건수 명가기간내신청접수건수 + (기한초과후신청처리건수 평가기간내신청접수건수 ×0.3)} ×100(%)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90% 이상	1등급 (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80% 이상 ~ 90% 미만	2등급 (3.8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70% 이상 ~ 80% 미만	3등급 (2.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60% 이상 ~ 70% 미만	4등급 (1.3점)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60% 미만	5등급 (0점)
	<그 외 기관 적용>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90% 이상	1등급 (3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80% 이상 ~ 90% 미만	2등급 (2.3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70% 이상 ~ 80% 미만	3등급 (1.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60% 이상 ~ 70% 미만	4등급 (0.8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60% 미만	5등급 (0점)

- ☞ [제출 불필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접수대장,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처리대장,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거부 사유 내역서(공공데이터포털 자료로 갈음) ☞ [확인방법] 공공데이터포털
- 제공신청 처리내역 및 소요기간
- 공공데이터 목록등록관리 > 신청 관리 > 데이터 제공 신청

- 처리상태 : 전체

- 담당기관 : 해당기관 확인

- 제공방법 : 선택

- 일자 : 제공신청, 2022년 8월 4일 ~ 2023년 8월 3일

#### 근거자료 (증빙자료)

- 검색 후 "엑셀다운로드"를 통해 자료를 받은 후, 제공신청건별로 "처리기한"열과 "처리일자"열을 비교하여 처리기한 내 처리일자가 있으면 기간 내 처리된 것으로 인정, 기한이 지난 처리일자가 있으면 기간 처리 후 처리건으로 인정

\* 신청접수 건수에서 "제공신청취소"건은 제외



#### 참고사항

- ☞ N/A 처리(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처리)
- 2022년 8월 4일 ~ 2023년 8월 3일까지 개방데이터 제공 신청 요청이 없는 경우

### ○「□ 개방 - ④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지표

정의	공공데이터를 오픈포맷 형식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 및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0-1	(대상 : 2023.8.31. 기준 포털에 개방 중이거나 개방 검토 요청한 파일데이터	)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	방공기업,
-11.0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배점	6점 ※ 기타공공기관에 한하여 7점 부여	
	■ 기관은 사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수정, 변환, 추출 등이 자유.	로운 오픈포맷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 개방데이터는 수정, 변환, 추출이 자유로운 CSV, XML, JSON, RD	F 등의 형태로
	제공한다.	
설명	※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아래한글, MS Excel 등)에서만 수정, 변환, 추출0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특정 소프트웨어에 독립적인 데이터 형태(포맷)를 의미한다.	
	※ 오픈포맷 해당 확장자: CSV, XML, SHP, RDF, TTL, STL, MP4, PY, GIF, GP)	k, fasta, sgml,
	JSON, TIFF, ODT, PNG, JPEG, HWPX, PPTX, DOCX, XLSX 등을 의미하며 '목록	등록관리시스템>
	통계조회>개방데이터 현황조회'결과에서 '오픈포맷 단계'가 3단계 이성	상인 경우
	오픈포맷으로 인정	
	오픈포맷 비중 =	
	포털에 개방된오픈포맷데이터수(파일데이터) 포털에 개방중이거나 개방검토요청한 전체데이터수(파일데이터) ×	100(%)
	포털에 개방숭이거나 개방검토요정한 전제데이터수(과일데이터)	
	<기타공공기관 적용>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기준	전체 개방데이터 중에서 오픈포맷 형식의 데이터가 90% 이상	1등급
712		(7저)
	전체 개방데이터 중에서 오픈포맷 형식의 데이터가 80% 이상	(7점) 2등급
	전체 개방데이터 중에서 오픈포맷 형식의 데이터가 80% 이상 ~ 90% 미만	(7점) 2등급 (5.3점)
		2등급
	~ 90% 미만 전체 개방데이터 중에서 오픈포맷 형식의 데이터가 70% 이상 ~ 80% 미만	2등급 (5.3점) 3등급 (3.5점)
	~ 90% 미만 전체 개방데이터 중에서 오픈포맷 형식의 데이터가 70% 이상 ~ 80% 미만 전체 개방데이터 중에서 오픈포맷 형식의 데이터가 60% 이상	2등급 (5.3점) 3등급 (3.5점) 4등급
	~ 90% 미만 전체 개방데이터 중에서 오픈포맷 형식의 데이터가 70% 이상 ~ 80% 미만	2등급 (5.3점) 3등급 (3.5점) 4등급 (1.8점)
	~ 90% 미만 전체 개방데이터 중에서 오픈포맷 형식의 데이터가 70% 이상 ~ 80% 미만 전체 개방데이터 중에서 오픈포맷 형식의 데이터가 60% 이상	2등급 (5.3점) 3등급 (3.5점) 4등급

#### <그 외 기관 적용> 등급 세부기준 (세부점수) 1등급 전체 개방데이터 중에서 오픈포맷 형식의 데이터가 90% 이상 (6점) 전체 개방데이터 중에서 오픈포맷 형식의 데이터가 80% 이상 ~ 2등급 기준 90% 미만 (4.5점) 전체 개방데이터 중에서 오픈포맷 형식의 데이터가 70% 이상 ~ 3등급 80% 미만 (3.0점) 전체 개방데이터 중에서 오픈포맷 형식의 데이터가 60% 이상 ~ 4등급 70% 미만 (1.5점) 5등급 전체 개방데이터 중에서 오픈포맷 형식의 데이터가 60% 미만 (0점) ☞ [제출 불필요] 개방데이터의 오픈포맷 제공 현황(공공데이터포털 자료로 갈음) ☞ **[확인방법]** 공공데이터포털 ○ 파일데이터 확인 방법 - 공공데이터 목록등록관리 > 통계조회 > 개방데이터 현황조회 - 조회기간 : 2013.01.01. ~ 2023.8.31. - 서비스유형: 파일데이터, 샘플데이터, LOD 연계파일 선택 개방데이터 현황 조회 개범파일테이터단위의 오픈포맷 통계를 제공합니다 · 조화기간 2013-01-01 - 2023-08-31 - 1개월 3세월 1년 근거자료 (증빙자료) □ 전체 선택 □ 경공기관 □ 교육기관 □ 교육명원기관 □ 국가병장기관 □ 사업기관 □ 위원회및 경제자유구역장 □ 입법기관 □ 자치분정기관 □ 항범기관 □ 기타기관 □ 전성 선택 □ 교육 □ 국표관리 □ 공공형성 □ 재정금융 □ 산업교용 □ 사회복자 □ 식용간성 □ 문화관광 □ 보건에도 □ 재난안전 □ 교통통류 □ 환경기상 □ 표박기술 □ 농속수산 □ 통일의고안보 □ 방통 -분류세계 서비스유형 - 목록명 □전체 선택 □텍스트 □등영상 □이미지 □소리 □앨티마디어 □데이터셋 □기타 □문서 □음성/응황 □공간 • 파일 유형 □전체선택 □임간 □주간 □임간 □분기 □반기 □연간 □수시 □기타 · 등록주기 유명 CSV다음로드 ※ 통계조회 메뉴는 개방이 완료된 데이터만 확인 가능

☞ [평가대상] 파일데이터 및 샘플데이터(요약 데이터) 대상으로 '23.8.31.까지 개방검토 요청 건 중 '23.9.30.까지 개방검토 완료된 데이터에 한하여 평가모수 (산정식 분모)에 반영(개방검토 요청 취소 또는 반려 건은 제외)

※ '23.9.1. ~ 9.30.까지 신규 데이터 등록 건은 모수 제외

~'23.8.31

평가대상 데이터 확정 ~'23.9.30

#### 참고사항

데이터 등록·변경 개방검토 요청기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개방검토 기간 ※ 해당기간에는 개방검토 반려건에 대해서만 개방검토 요청 가능

- ☞ (N/A처리) 2013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개방데이터가 0개인 경우
- ☞ (평가제외) 링크데이터
- 각 기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링크데이터 개방을 자제해야 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링크는 자제)

### ○「□ 개방 - ⑤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지표

정의			
변상 : 2023.8.31. 기준 포털에 개방 중이거나 개방검토 요청한 파일데이터)  대상 : 2023.8.31. 기준 포털에 개방 중이거나 개방검토 요청한 파일데이터)  지당 기단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배점 6점 ※ 기타공공기관에 한하여 7점 부여  • 개방데이터는 데이터 제공주기를 준수하여 제공한다.  - 개방데이터는 데이터 제공주기에 따라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제공주기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제공주기를 개선한다.  - (참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 • 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면, 업데이트 주기와 차기 등록 예정일을 제출해야 함  제공주기 준수율=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개방하는 모든 데이터어	네 대하여
보력 및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대상: 2023.8.31. 기준 포털에 개방 중이거나 개방검토 요청한 파일데이터)	정의	제공주기(갱신주기)를 정의하고, 정의한 주기에 맞추어 데이터를 제	예공하고 있는
대상		노력 및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대상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점 6점 ※ 기타공공기관에 한하여 7점 부여  #대형 대한 대이터는 데이터 제공주기를 준수하여 제공한다 개방데이터는 정해진 제공주기에 따라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제공주기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제공주기를 개선한다 (참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ㆍ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면, 업데이트 주기와 차기 등록 예정일을 제출해야 함  #대형 제공주기 준수율=  ***********************************		(대상 : 2023.8.31. 기준 포털에 개방 중이거나 개방검토 요청한 파일데이터)	
#점 6점 ※ 기타공공기관에 한하여 7점 부여  • 개방데이터는 데이터 제공주기를 준수하여 제공한다 개방데이터는 정해진 제공주기에 따라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제공주기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제공주기를 개선한다 (참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 • 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면, 업데이트 주기와 차기 등록 예정일을 제출해야 함   제공주기 준수율=  **가등목에정인이'23.8.31 이후인목목수(과일) ※보면에게방중이거나 개방건도요정한 전체목목수(과일) ※보면에 제공주기 준수율이 90% 이상 (개절)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80% 이상 ~ 90% 미만 (5.3점)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70% 이상 ~ 80% 미만 (3.5점)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60% 이상 ~ 70% 미만 (1.8점) 개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등급급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	공기업,
● 개방데이터는 데이터 제공주기를 준수하여 제공한다 개방데이터는 정해진 제공주기에 따라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제공주기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제공주기를 개선한다 (참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ㆍ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면, 업데이트 주기와 차기 등록 예정일을 제출해야 함  제공주기 준수율=	-110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 개방데이터는 정해진 제공주기에 따라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제공주기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제공주기를 개선한다 (참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ㆍ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면, 업데이트 주기와 차기 등록 예정일을 제출해야 함    제공주기 준수율=	배점	6점 ※ 기타공공기관에 한하여 7점 부여	
정기적으로 제공주기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제공주기를 개선한다.  - (참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ㆍ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면, 업데이트 주기와 차기 등록 예정일을 제출해야 함  제공주기 준수율=  차기등록예정일이 '23.8.31 이후인 목록수 (화일) 포턴에게방중이거나 개방검토요정한 전체목록수(화일) × 100(%)  로텔에게방중이거나 개방검토요정한 전체목록수(화일) 1등급 (세부점수)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90% 이상 70% 미만 2등급 (5.3점)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80% 이상 ~ 90% 미만 3등급 (3.5점)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60% 이상 ~ 70% 미만 4등급 (1.8점) 개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5등급		■ 개방데이터는 데이터 제공주기를 준수하여 제공한다.	
설명  - (참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 · 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면, 업데이트 주기와 차기 등록 예정일을 제출해야 함   제공주기 준수율=  참기등록예정일이 '23.8.31 이후인목록수 (파일) 포럽에게방중이거나 개방검토요정한 전체목목수 (파일) × 100(%)  ***********************************		- 개방데이터는 정해진 제공주기에 따라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	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ㆍ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면, 업데이트 주기와 차기 등록 예정일을 제출해야 함  제공주기 준수율=		정기적으로 제공주기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제공주기를 개선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 · 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면, 업데이트 주기와 차기 등록 예정일을 제출해야 함  제공주기 준수율=	선명	- (참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량	령 제16조 ①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면, 업데이트 주기와 차기 등록 예정일을 제출해야 함  제공주기 준수율=	20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포털에 연	계・제공하는
에정일을 제출해야 함  제공주기 준수율=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공주기 준수율=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면, 업데이트 주기	와 차기 등록
지구 보험에 개방중이거나 개방검토요청한 전체목록수(파일) × 100(%)  지부기준  세부기준  세부기준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90% 이상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80% 이상 ~ 90% 미만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70% 이상 ~ 80% 미만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60% 이상 ~ 70% 미만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60% 이상 ~ 70% 미만  기준  무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60% 이상 ~ 70% 미만  지등급 (3.5점)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60% 이상 ~ 70% 미만  지등급 (1.8점)  개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등급 (1.8점)			
지한 지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5등급 (1.8점) 지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5등급 (2.3점) 지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5등급 (2.3점)		예정일을 제출해야 함	
지수 세부기준 (세부점수)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90% 이상 1등급 (7점)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80% 이상 ~ 90% 미만 2등급 (5.3점)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70% 이상 ~ 80% 미만 3등급 (3.5점)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60% 이상 ~ 70% 미만 4등급 (1.8점)  개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5등급		제공주기 준수율=	
기준    지부기준 (세부점수)   1등급 (7점)   1등급 (7점)   1등급 (7점)   1등급 (7점)   2등급 (7점)   2등급 (5.3점)   2등급 (5.3점)   2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80% 이상 ~ 90% 미만 (5.3점)   3등급 (3.5점)   2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70% 이상 ~ 80% 미만 (3.5점)   4등급 (1.8점)   1개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5등급 (1.8점)		제공주기 준수율=	6)
지준		제공주기 준수율=  차기등록예정일이 '23.8.31 이후인 목록수 (파일)  포털에 개방중이거나 개방검토요청한 전체목록수(파일) × 100(%	6)
기준		제공주기 준수율=	등급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80% 이상 ~ 90% 미만 (5.3점)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70% 이상 ~ 80% 미만 (3.5점)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60% 이상 ~ 70% 미만 (1.8점)  개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5등급		제공주기 준수율=	등급 (세부점수)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70% 이상 ~ 80% 미만 3등급 (3.5점)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60% 이상 ~ 70% 미만 4등급 (1.8점) 개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5등급		제공주기 준수율=	등급 (세부점수) 1등급
목록의 제공수기 순수율이 70% 이상 ~ 80% 미만 (3.5점)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60% 이상 ~ 70% 미만 (1.8점) 개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5등급	기준	제공주기 준수율=	등급 (세부점수) 1등급 (7점) 2등급
목록의 제공수기 순수율이 60% 이상 ~ 70% 미만 (1.8점) 개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5등급	기준	제공주기 준수율=	등급 (세부점수) 1등급 (7점) 2등급 (5.3점)
개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5등급	기준	제공주기 준수율=	등급 (세부점수) 1등급 (7점) 2등급 (5.3점) 3등급
	기준	제공주기 준수율=	등급 (세부점수) 1등급 (7점) 2등급 (5.3점) 3등급 (3.5점)
목록 제공주기 준수율이 60% 미만 ( <b>0점)</b>	기준	제공주기 준수율=	등급 (세부점수) 1등급 (7점) 2등급 (5.3점) 3등급 (3.5점) 4등급
	기준	제공주기 준수율=  차기등록예정일이'23.8.31 이후인 목록수(파일) 포팅에개방중이거나 개방검토요청한 전체목록수(파일) × 1000(%  <기타공공기관 적용>  세부기준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90% 이상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80% 이상 ~ 90% 미만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70% 이상 ~ 80% 미만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60% 이상 ~ 70% 미만  개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등급 (세부점수) 1등급 (7점) 2등급 (5.3점) 3등급 (3.5점) 4등급 (1.8점) 5등급

#### <그 외 기관 적용> 등급 세부기준 (세부점수) 1등급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90% 이상 (6점) 2등급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80% 이상 ~ 90% 미만 기준 (4.5점) 3등급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70% 이상 ~ 80% 미만 (3.0점) 4등급 목록의 제공주기 준수율이 60% 이상 ~ 70% 미만 (1.5점) 개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5등급 (0점) 목록 제공주기 준수율이 60% 미만 ☞ [제출 불필요] 개방데이터(파일데이터) 제공주기가 정의된 문서 또는 근거 / 개방데이터(파일데이터) 갱신 이력(공공데이터포털 자료로 갈음) ☞ 제공주기가 있는 데이터(파일)는 평가대상에 해당(수시-시스템데이터)되며, 제공주기가 없는 '1회성 데이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확인방법] 공공데이터포털 ○ 개방된 목록별(파일) 제공주기, 차기등록예정일 - 통계조회 > 개방목록 현황조회 - 조회기간 : 2013년 1월 1일 ~ 2023년 8월 31일 - 제공주기준수 확인 : 체크 ※ 제공주기준수 확인 시, 1회성 데이터, 링크데이터 제외되어 검색 개방목록 현황 조회 근거자료 1개월 3세월 1년 (증빙자료) - 조뢰기간타입 ● 기반기준 -기본보이로 개인기준으로 3호하나다 폐기 목록 포함 여부 ○에 ● 아니오 +목록통일자 기준으로 개성목록 검색 결과가 출락됩니다 □파일데이터 □오픈API □프존데이터넷 □미구분(상세내역업용 제공주기준수확인 결약 - 849 O에 O아니요 · 미객용 · 레이지당 조립 수 50개억 조회 3.75 검색 - 위의 조건 검색 조건으로 검색 후 'CSV 다운로드'를 통해 제공주기 준수 여부 항목 확인 - 차기등록예정일이 기준일(2023년 8월 31일)이전 날짜인 경우 제공주기 미준수,

차기등록예정일이 기준일 이후 날짜인 경우 제공주기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 ☞ (N/A처리) 2013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개방데이터가 0개인 경우

- ☞ 5등급(0점) 처리 및 부정행위 사례
- 데이터 내용의 현행화 없이 의도적으로 파일명만 변경·등록하거나 평가 모수를 줄일 목적으로 주기성 데이터를 1회성 수시 데이터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필요시 기관명 공지)
- ☞ 평가 제외 사례
- 링크데이터 및 1회성 수시데이터

#### 참고사항

- [평가대상] 파일데이터 및 샘플데이터(요약 데이터) 대상으로 '23.8.31.까지 개방검토 요청 건 중 '23.9.30.까지 개방검토 완료된 데이터에 한하여 평가모수 (산정식 분모)에 반영(개방검토 요청 취소 또는 반려 건은 제외)
  - ※ '23.9.1. ~ 9.30.까지 신규 데이터 등록 건은 모수 제외

평가대상 데이터 확정 ~'23.8.31 ~'23.9.30

데이터 등록·변경 개방검토 요청기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개방검토 기간 ※ 해당기간에는 개방검토 반려건에 대해서만 개방검토 요청 가능

각 기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링크데이터 개방을 자제해야 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0조제1항 및 별표1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링크는 자제)

### 3. 활용 영역

#### < 평가목적 >

공공데이터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확산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민·기업 등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력 및 실적을 평가

○「Ⅲ 활용 - ①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지표

정의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및 그 노력에 따	라 실질적으로
	데이터 활용도가 제고된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FILAL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	방공기업)
대상	※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은 제외	
배점	8점 ※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7점	
	■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하며, 해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내용부실·중복등록·갱신누락 등 개선, 오픈API 및 링크	1데이터 연결
설명	오류 개선, 원천·통계성 데이터 등 활용도가 낮은 개방된 공공데	베이터에 대한
	원인분석 개선방안 마련 및 개선이행, 기타 활용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의견수렴 및 개선반영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적용>	
	벱기즈	등급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b>세부기준</b>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매우 우수함	(세부점수) 1등급
	<u> </u>	(세부점수) 1등급 (7점)
	<u> </u>	(세부점수) 1등급 (7점) 2등급
기주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매우 우수함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우수함	(세부점수) 1등급 (7점)
기준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매우 우수함	(세부점수) 1등급 (7점) 2등급 (5.3점)
기준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매우 우수함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우수함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보통임	(세부점수) 1등급 (7점) 2등급 (5.3점) 3등급 (3.5점) 4등급
기준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매우 우수함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우수함	(세부점수) 1등급 (7점) 2등급 (5.3점) 3등급 (3.5점) 4등급 (1.8점)
기준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매우 우수함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우수함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보통임	(세부점수) 1등급 (7점) 2등급 (5.3점) 3등급 (3.5점) 4등급

#### <그 외 기관 적용> 등급 세부기준 (세부점수) 1등급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매우 우수함 (8점) 2등급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우수함 (6점) 기준 3등급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보통임 (4점) 4등급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미흡함 (2점) 5등급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매우 미흡함 (0점) ☞ 평가 착안사항 ① 활용도가 낮은 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 여부 등 ② 기 개방된 통계성 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변경하거나, 분류(카테고리) 세분화 등을 통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하고 정비한 실적 \* (예시) 지역별 교통사고 건수(활용성 낮음) → 교통사고 발생 세부장소·시간대·기간·유형· 속성 등 상세데이터(활용성 높음)로 변경 ③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타 기관\*과 상호 간 협력한 노력 정도(데이터 근거자료 공유, 협업 과제 발굴 등) (증빙자료) \* 소속 및 상위 기관, 민간기업, 협회 및 단체 등 포함 ④ 활용도 현황 파악 → 국민·기업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활용도 제고 계획수립 → 시행 추진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한 활용도 제고 노력 정도 \* 소상공인·노약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 민간기업 및 데이터 전문가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의견수렴(간담회 등) 등 ⑤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및 대국민 홍보 노력을 통한 데이터 활용도, 만족도 등의 개선 실적 및 성과

※ 홈페이지·SNS 등에 관련 내용 게시 및 언론보도 등

근거자료 (증빙자료)	[보고서 제출] 정성평가를 위한 별도 보고서양식(별첨 03, 평가시스템에 다운로드) 작성 및 제출 필요 [증빙자료 제출] 데이터 활용현황 분석 보고서, 활용도 제고 계획 및 결과보고서, 타 기관 협업 계획 및 결과보고서, 민간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참고사항	<ul> <li>[평가방법]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의 절대평가(1점~100점) 이후 기관유형별(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대평가 실시</li> <li>※ 상대평가 등급비율 : 1등급(10%, 누적상위 10%), 2등급(20%, 누적상위 30%), 3등급(40%, 누적상위 70%), 4등급(20%, 누적상위 90%), 5등급(10%, 누적 100%)</li> <li>※ 등급비율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li> <li>[불인정 사례] 실적 기준일(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 내의 실적이 아닐 경우</li> <li>※ 활용도 분석, 회의 등 공식 결과보고에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만 인정</li> </ul>

### ○「Ⅲ 활용 - ②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노력 및 실적」지표

정의	국민·기업 등이 기관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원활하게 활동지원한 노력 및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용할 수 있도록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	기방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은 제외	
배점	7점 ※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4점	
설명	■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수요발굴을 위한 민관협력·파트너십, 활용 지원 협업고 발굴, 지역·사회 현안 해결, 창업·기업 성장,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기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지원을 위한 가능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수요발굴 등을 위한 민관협력파트너십,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경진 /해커톤 개최, 기업·예비창업자 대상 기관보유 공공데이터 설명회 개최, 각종 컨설팅 속 관련 예산·장소 지원 및 이를 통한 실적(민간의 파급력 있는 웹·앱 서비스 개발, 매출경 고용 창출·증대, 창업·기업 성장, 해외진출, 사회적 가치 제고, 공공데이터 인재 양성 등	
	관련 예산·장소 지원 및 이를 통한 실적(민간의 파급력 있는 웹·앱 서비스	느 개발, 매출증대
	관련 예산·장소 지원 및 이를 통한 실적(민간의 파급력 있는 웹·앱 서비스	스 개발, 매출증대 인재 양성 등) 등
	관련 예산·장소 지원 및 이를 통한 실적(민간의 파급력 있는 웹·앱 서비스 고용 창출·증대, 창업·기업 성장, 해외진출, 사회적 가치 제고, 공공데이터	느 개발, 매출증대
	관련 예산·장소 지원 및 이를 통한 실적(민간의 파급력 있는 웹·앱 서비스 고용 창출·증대, 창업·기업 성장, 해외진출, 사회적 가치 제고, 공공데이터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적용>	는 개발, 매출증대 인재 양성 등) 등 등급
	관련 예산·장소 지원 및 이를 통한 실적(민간의 파급력 있는 웹·앱 서비스 고용 창출·증대, 창업·기업 성장, 해외진출, 사회적 가치 제고, 공공데이터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적용> 세부기준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는 개발, 매출증대 인재 양성 등) 등 등급 (세부점수) 1등급
기준	관련 예산·장소 지원 및 이를 통한 실적(민간의 파급력 있는 웹·앱 서비스 고용 창출·증대, 창업·기업 성장, 해외진출, 사회적 가치 제고, 공공데이터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적용> 세부기준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매우 우수함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는 개발, 매출증대 인재 양성 등) 등 등급 (세부점수) 1등급 (4점) 2등급
기준	관련 예산·장소 지원 및 이를 통한 실적(민간의 파급력 있는 웹·앱 서비스 고용 창출·증대, 창업·기업 성장, 해외진출, 사회적 가치 제고, 공공데이터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적용>     세부기준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매우 우수함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및 실적이 우수함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및 실적이 우수함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는 개발, 매출증대 인재 양성 등) 등 (세부점수) 1등급 (4점) 2등급 (3점) 3등급

#### <그 외 기관 적용>

#### 기준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1등급
지원하기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매우 우수함	(7점)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2등급
지원하기 위한 노력 및 실적이 우수함	(5.3점)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3등급
지원하기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보통임	(3.5)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4등급
지원하기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미흡함	(1.8)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5등급
지원하기 위한 노력 및 실적이 매우 미흡함	(0점)

#### ☞ 평가 착안사항

- ①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수요 파악→계획수립→시행 추진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 노력\* 정도
  - \* 기업 간담회·인터뷰·설문조사 등을 통한 활용지원 수요 파악·계획 반영, 민관협력·파트너십 운영, 협업과제 발굴, 디지털 약자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예, 소상공인·노약자·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 격차 해소정책 추진), 지역·사회 현안 해결, 신규 비즈니스 창출(민간의 파급력 있는 웹·앱 서비스 개발, 매출 증대, 고용 창출·증대, 해외 진출 등), 창업 및 기업 성장 등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관련 각종 노력

### 근거자료 (증빙자료)

- ②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진대회 및 설명회 개최, 컨설팅 수행 등 공공데이터 활용 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 노력\*
  - \* 아이디어 공모전, 경진대회/해커톤 개최, 기업·예비창업자 대상 기관보유 공공데이터 설명회 개최, 각종 컨설팅 수행, 관련 예산·장소 지원 등(유관기관·상위기관 등과의 공동 개최도 가능. 단, 공동 개최 시에는 각 기관의 담당자 참석이 증빙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③ 기관이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지원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나타난 성과 정도
  - ※ (예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디지털 약자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리빙랩 등을 통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 창업·기업 성장 등 활용 지원성과)
- ④ 활용지원 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노력 및 실적 등
  - ※ 홈페이지·SNS 등에 관련 내용 게시 및 언론보도 등

### ☞ [보고서 제출] 정성평가를 위한 별도 보고서양식(별첨 04, 평가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작성 및 제출 필요

#### ☞ 증빙자료 제출

### 근거자료 (증빙자료)

- 활용지원 수요·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민관협력·파트너십 결과, 국민·기업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계획 및 결과보고서, 공공데이터 경진대회 계획 및 결과보고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성장, 신규 비즈니스 창출, 지역·사회 현안 해결 지원,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 ※ 경진대회, 해커톤, 기관보유 공공데이터 설명회 등의 유관기관·상위기관간 공동 추진(주관, 주최, 후원 등)을 실적으로 인정
- 신규 비즈니스 창출(웹, 앱서비스 개발, 매출증대, 고용증대, 해외진출 등) 실적, 창업·기업 성장 및 스타트업 지원 내역, 사회적 가치 제고, 공공데이터 인재 양성 등
  - ※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참고사항

- ☞ [평가방법]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의 절대평가(1점~100점) 이후 기관유형별(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대평가 실시
  - ※ 상대평가 등급비율: 1등급(10%, 누적상위 10%), 2등급(20%, 누적상위 30%), 3등급(40%, 누적상위 70%), 4등급(20%, 누적상위 90%), 5등급(10%, 누적 100%)
  - ※ 등급비율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 **[불인정 사례]** 실적 기준일(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 내의 실적이 아닐 경우
  - ※ 활용도 분석, 회의 등 공식 결과보고에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만 인정

### ○「□ 활용 - ③ 오류신고 적기처리율」지표

정의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를 적기에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대상: 2022. 8. 19 ~ 2023. 8. 18 동안 접수된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건, 2022.8.19.은 전년도 평가 집계일, 2023.8.18일은 데이터 오류 신고 처리 마감 일자를 고려함) * 공공데이터 포털 내의 개방데이터 관련 'Q&A', '의견수렴', '오픈API 활용 문의' 등을 포함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배점	4점 ※ 기타공공기관 5점, 교육행정기관 2점	
설명	■ 기관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목록을 점검하고, 적기에 오류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오류신고 및 문의에 신속 정확하게 시정조치 및 답변하여야 한다. ※ 개방데이터 관련한 오류신고 및 각종 문의에 대한 확인답변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 가능	
	데이터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  신고처리기한(10일이내)내처리된오류신고및문의건수 평가기간내신고 접수된오류신고및문의건수  <기타공공기관 적용>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가 없거나, 오류신고 적기처리율이 90% 이상	1등급 (5점)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적기처리율이 80% 이상 ~ 90% 미만	2등급 (3.8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적기처리율이 70% 이상 ~ 80% 미만	3등급 (2.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적기처리율이 60% 이상 ~ 70% 미만	4등급 (1.3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적기처리율이 60% 미만	5등급 (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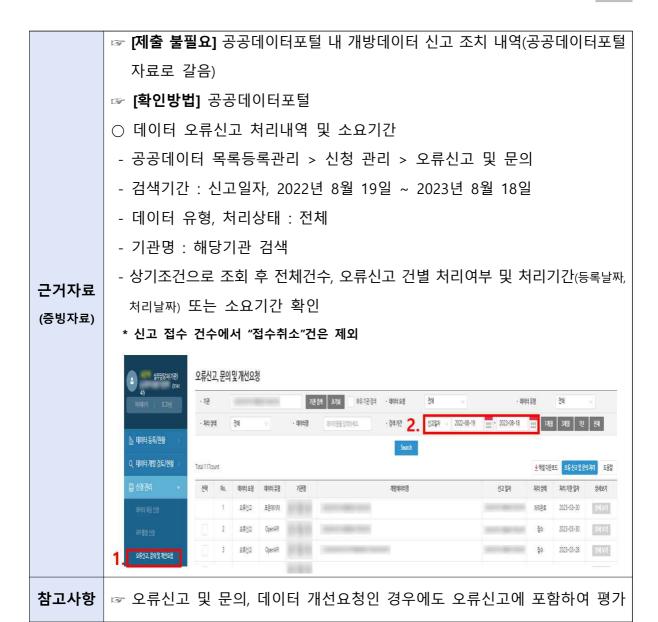
#### <교육행정기관 적용>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가 없거나, 오류신고	1등급
적기처리율이 90% 이상	(2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적기처리율이 80%	2등급
이상 ~ 90% 미만	(1.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적기처리율이 70%	3등급
이상 ~ 80% 미만	(1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적기처리율이 60%	4등급
이상 ~ 70% 미만	(0.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적기처리율이 60% 미만	5등급 (0점)

기준

#### <그 외 기관 적용>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가 없거나, 오류신고	1등급
적기처리율이 90% 이상	(4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적기처리율이 80%	2등급
이상 ~ 90% 미만	(3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적기처리율이 70%	3등급
이상 ~ 80% 미만	(2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적기처리율이 60%	4등급
이상 ~ 70% 미만	(1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적기처리율이 60%	5등급
미만	(0점)



### ○「Ⅲ 활용 - ④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지표

정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채널 운영 및 의견수렴 활동을 사용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배점	4점 ※ 기타공공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하여 5점		
설명	■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 사용자 및 잠재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규데이터 개방수요 발굴, 개방 중인 데이터의 활용도 분석, 활용개선 등을 위해 의견수렴 채널 운영 및 의견수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 국민, 기업, 시민사회, 개발자, 전문가 등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적용>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① 온라인 설문조사(대국민 수요조사 등) ② 간담회 및 인터뷰(기업·전문가·수요자 자문, 간담회 등) ③ 상시 의견수렴 창구 운영(홈페이지 게시판, SNS 등)		
기준	위 기준 중 2개 이상의 의견수렴 채널 운영	1등급 (5점)	
	위 기준 중 1개의 의견수렴 채널 운영	3등급 (2.5점)	
	의견수렴 채널 미운영	5등급 (0점)	

	<그 외 기관 적용>	
	세부기준	등급 (세부점수)
기준	① 온라인 설문조사(대국민 수요조사 등) ② 간담회 및 인터뷰(기업·전문가·수요자 자문, 간담회 등) ③ 상시 의견수렴 창구 운영(홈페이지 게시판, SNS 등)	
	위 기준 중 2개 이상의 의견수렴 채널 운영	1등급 (4점)
	위 기준 중 1개의 의견수렴 채널 운영	3등급 (2점)
	의견수렴 채널 미운영	5등급 (0점)
근거자료	☞ 의견수렴 채널 운영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의견수렴 채널 운영에 따른 증빙자료(홈페이지 설문조사, 게시 운영 등 캡쳐본)	판 운영, SNS
참고사항	□ 불인정 사례 - 의견수렴 활동(온라인 설문조사 및 간담회·인터뷰·자문 등) 실적에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되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개방수요 발굴, 활용개선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예, 개별기관 자체 포털 개방데이터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 실적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공공데이터포털 외의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이라도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데이터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 - 기관 보유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 개방·활용촉진과 무관한 단순 기관홈페이지·시스템 등의 만족도 조사 - 의견수렴 활동(온라인 설문조사 및 간담회·인터뷰·자문 등)을 내부 직원, 인턴 직원, 기관 내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경우 - 공식적인 문서(보고, 결재)가 아닌 경우 - 실적 기준일(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 내의 실적이 아닐 경우 ※ 설문조사, 회의 등 공식 결과보고에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만 인정	

### 4. 품질 영역

#### < 평가목적 >

공공기관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진단

※ 세부사항은 별도 배포되는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매뉴얼 참조

#### ○ 「Ⅳ 품질 - ① 데이터 관리체계」지표

정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수립된 관리체계에 따라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배점	14점 ※ 기타공공기관 11점, 교육행정	기관 8점			
설명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데이터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DB에 적용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단계부터 사전·예방적 품질관리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기준	기준     ① 관리절차 준수     ② 품질관리 계획 수립     ③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④ 데이터 표준 확산     ⑤ 데이터 구조 안정화     ⑥ 데이터 연계 관리  ※ 기타공공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은 점수합산 후 기관 배점 ※ 평가 지표별 세부 기준은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근거자료 (증빙자료)	☞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매뉴얼('23.6.2.) 참고				
참고사항	☞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매뉴얼('23.6.2.) 참고				

### ○ 「Ⅳ 품질 - ② 데이터 값 관리」지표

정의	각 기관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DB 및 개방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품질진단과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배점	21점 ※ 기타공공기관 17점, 교육행정기관 12점				
설명	■ 각 기관은 구축·운영하고 있는 DB 및 개방데이터 값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품질진단을 수행하여야 하며, 진단결과에 따른 오류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준	기준 배점				
근거자료 (증빙자료)	☞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매뉴얼('23.6.2.) 참고				
참고사항	☞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매뉴얼('23.6.2.) 참고				

### 5. 기타(감점)

#### < 평가목적 >

직접 제공 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여부, 민간 중복 유사서비스 정비 수행여부 등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이행 등을 별도 감점 지표로 평가

### ○「☑ 기타(감점) - ① 직접 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지표

-1.01	공공데이터포털로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직접 제공한 경 데이터를 샘플 파일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하고 있는지 평	
정의	(대상 : 2022.8.4 ~ 2023.8.3. 동안 제공신청 접수 건 중 2023.8.31.까지 직접 제공 : 데이터)	– .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배점	공공데이터포털 미개방 비율에 따라 최대 -1점	
설명	■ 모든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면 신청인이 요청한 원본 데이터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데이 개방하지 못하고 직접 제공(방식: 정보통신망 또는 직접 방문)한 해당 데이터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데이터 등록/현황' > '파일데(메뉴)에 '샘플파일 등록' 형태(일종의 요약 데이터)로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함으로서 대국민 개방 효과를 제고하여(* 유료·대용량 데이터, 소관 법령상의 이유로 원본 데이터의 포털 개방이 불계 신청인에게 직접 제공한 데이터를 샘플 파일 형태로 공공데이 개방하지 않은 경우 미개방 비율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터포털로 경우에도 이터 등록' 등록 및 야 한다.
	세부기준	감점
	세부기준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미만 또는 직접 제공 데이터 실적이 없는 경우	<u> </u>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미만 또는 직접 제공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미만 또는 직접 제공 데이터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미만 또는 직접 제공 데이터 실적이 없는 경우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이상 ~ 20% 미만	0점 -0.2점
기준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미만 또는 직접 제공데이터 실적이 없는 경우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이상 ~ 2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20% 이상 ~ 30% 미만	0점 -0.2점 -0.4점
기준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미만 또는 직접 제공 데이터 실적이 없는 경우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이상 ~ 2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20% 이상 ~ 3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30% 이상 ~ 4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40% 이상 직접 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	0점 -0.2점 -0.4점 -0.8점
기준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미만 또는 직접 제공데이터 실적이 없는 경우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이상 ~ 2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20% 이상 ~ 3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30% 이상 ~ 4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40% 이상	0점 -0.2점 -0.4점 -0.8점
기준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미만 또는 직접 제공 데이터 실적이 없는 경우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이상 ~ 2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20% 이상 ~ 3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30% 이상 ~ 4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40% 이상 직접 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	0점 -0.2점 -0.4점 -0.8점 -1점
기준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미만 또는 직접 제공 데이터 실적이 없는 경우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이상 ~ 2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20% 이상 ~ 3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30% 이상 ~ 4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40% 이상  직접 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  1 - 직접제공데이터 중샘플데이터의 포털개방건수**	0점 -0.2점 -0.4점 -0.8점 -1점
기준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미만 또는 직접 제공데이터 실적이 없는 경우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10% 이상 ~ 2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20% 이상 ~ 3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30% 이상 ~ 40% 미만 직접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40% 이상  직접 제공 데이터의 포털 미개방 비율(%) =  1 - 직접제공데이터 중샘플데이터의 포털개방 건수**	0점 -0.2점 -0.4점 -0.8점 -1점



개방 시 저작권법 침해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평가 모수에서 제외

### ○ 「☑ 기타(감점) - ②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미수행」지표

정의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평가한다.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배점	(-1점) / 건
설명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감점 적용한다.
기준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정비 대상 서비스별 1점씩 감점 ※ 정비를 수행하지 않은 서비스가 2개일 경우 2점 감점
근거자료 (증빙자료)	☞ <b>[제출 불필요]</b> 행정안전부 보유자료로 판단
참고사항	<ul> <li>■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비를 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미수행한 것으로 판단</li> <li>■ 정비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정비 미수행 기관에서 제외</li> </ul>

### ○ 「☑ 기타(감점) - ③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지표

질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른 제공 권고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평가한다.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배점	(-1점) / 건				
설명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른 제공권고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한다.				
기준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른 제공권고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은 경우				
근거자료 (증빙자료)	☞ <b>[제출 불필요]</b> 행정안전부 보유자료로 판단				
참고사항	해당없음				

### Ⅲ 평가 유의사항

### 1. 평가대상기관 유형별 점수 환산 방법

	평가지표			기관 유형					
영역	지표명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기타 공공	교육 행정
관리 체계	□-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정성	5	5	7	5	7	7	7
	□-②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정량	1	1	2	1	2	3	3
	□-③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 교육 참여	정량	1	1	2	1	2	3	3
	四-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정량	10	10	10	10	10	10	-
	Ⅲ-②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정성	10	10	10	10	10	-	-
개방	Ⅲ-③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	정량	3	3	3	3	3	5	3
	Ⅲ-④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정량	6	6	6	6	6	7	6
	Ⅲ-⑤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정량	6	6	6	6	6	7	6
	▥-①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정성	8	8	7	8	7	-	-
활용	▥-②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 및 실적	정성	7	7	4	7	4	-	-
필증	▥-③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정량	4	4	4	4	4	5	2
	▥-④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정량	4	4	4	4	4	5	5
	<ul><li>☑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li><li>★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결과</li></ul>	정량	35	35	35	35	35	28	20
품질	ႍႍႍ-① 데이터 관리체계	(정량)	14	14	14	14	14	11	8
	-② 데이터 값 관리	(정량)	21	21	21	21	21	17	12
	☑-① 직접제공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미개방	정량	-1						
기타 (감점)	☑-②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미수행	정량			-1	/ 건	!		
, = =,	☑-③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정량	-1 / 건						

- ※ 공공(중앙) :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공(지방) : 지방공기업
- ※ 기타공공기관은 총 배점 80점, 교육행정기관은 총 배점 55점을 100점 환산평가
- ※ N/A는 해당 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의 총배점 대비 획득점수 비율로 환산

### 2. 근거자료 등록

○ all.data.go.kr(공공데이터 목록등록관리) > 기관 실무/업무담당자 로그인 > 기관시스템 연계 > 운영실태평가 > 평가시스템 이동으로 접속, 지표별 실적 등록



### 3. 평가 결과 확인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평가 결과 확인 가능



### 4. 증빙자료 인정 여부

- 제출 증빙자료가 실적 기준일('22. 9. 1.~'23. 8. 31.) 내의 실적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인정
  - ※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진, 캡쳐 자료 등의 날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2022년도 사례 예시

### □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구분		주요 내용
<b>₹</b> 0l		데이터 전수조사, 사용자 수요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 - (내용) 데이터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이 필요로
중앙 행정 기관	국토 교통부	하는 데이터를 개방 - ( <b>성과</b> ) 부동산 실거래 유형 및 중개인 소재지 정보,
		공동주택정보, 공장·창고 가격정보 등 사회현안 관련 고수요 데이터 개방을 통한 시장 신뢰도 제고
		고수요·고가치 기반의 중요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 개방 추진
광역 자치 단체	인천 광역시	- ( <b>내용</b> )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픈API 서비스 개발 및 개방, 비정형 데이터 신규 개방 - ( <b>성과</b> ) 사회현안 데이터, 사회적 약자관련 데이터 등 신규 개방 완료, 타기관간 상호협력을 통한 신규데이터 개방 추진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분석을 통한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
기초 자치 단체	대구 광역시 동구	- ( <b>내용</b> ) 대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를 분석하여 추가 개방 가능 데이터 발굴 및 공공데이터·공동활용데이터로 개방
	0 1	- ( <b>성과</b> ) 사용자 중심의 활용성 있는 신규 데이터 25건 개방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고수요 데이터 신규 개방
공공 기관	서울 교통 공사	- ( <b>내용</b> ) 공공·민간기업의 데이터 요청 관련 데이터 발굴, 협업을 통한 실시간 열차지연 정보, 환승정보 등 업의 특성을 반영한 고수요 데이터 개방
		- ( <b>성과</b> ) 대시민 의견 반영한 고수요·고품질 데이터 25종 신규 개방 및 국민 맞춤형 양질의 데이터 확보

### □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구분		주요 내용
중앙 행정 기관	기상청	주기적 개방데이터의 활용정도 측정 및 급증·급락 원인 파악  - (내용) 개방 데이터의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해 제공 형식별 활용도, 활용 실적별 원인 분석 및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성과) 연도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도(데이터 다운로드 수, API 호출건수 등)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 공공데이터 오픈API 총 호출건수: '19년37억건→'20년39억건→'21년60억건
광역 자치 단체	부산광역시	대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점검 정비 및 현행화 오류개선 조사 - (내용) 공공데이터 개방자료 매월 현행화 점검 정비 조사 및 개방데이터의 신규, 변경, 삭제 대상 조사 데이터 정비 - (성과) 개방된 공공데이터 활용실적 급증, 실생활과 밀접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데이터의 활용 효과가 두드러짐 ※(정량) 21년 대비 전체 229572% 증가(파일데이터 20.11%, 오픈API 15.03%)
기초 자치 단체	전라북도 군산시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도출  - (내용) 공공데이터 개방 시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의 개방 추진 및 공공데이터 포털의 접근성 확대와 홍보  - (성과)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방 데이터 오픈포맷 비율 100% 달성
공공 기관	한국 동서발전(주)	공공데이터 실시간 개방 서비스 구축 및 Open API 전환개방확대  - (내용) 대국민 사용 편의성 고려 Open API 방식 개방,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웹/앱 서비스 실시간 데이터 제공  - (성과) 제공 공공데이터 자동 업데이트 처리 및 오류 여부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실시간 서비스 대국민 만족도 제고 및 관리효율 향상

### □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노력 및 실적

	구분	주요 내용
중앙 행정 기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구축가공·성장단계별 기업 지원  - (내용) DATA-Star 사업 추진, 데이터 구축·가공 및 활용서비스 기업에게 ERTI 연구 데이터 및 기술 지원  - (성과) 신규서비스 출시 및 개발 지원 및 데이터 활용을 이용한 민간기업의 서비스 개발 지원
광역 자치 단체	경기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활용 맞춤복지 제공 서비스 지원  -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경기도 데이터 신규 분석 과제 수요조사 실시, 경기 복지 맞춤정보 알림앱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  - (성과) 분석용 민간데이터의 제공범위 확대 추진, 데이터 신규 분석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도·시·군에서 공동 활용 가능한 신규데이터 분석 4건 추진
기초 자치 단체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자원사회현안해결, 공공사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사비스 개발제공- (내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지업 사업 기획·추진, 주민 수요파악·데이터 민간기업 결과 반영한 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성과) 데이터 분야 지역 청년(38명) 일자리 창출 기여, 창업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
공공 기관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사용자·기업 수요를 반영한 국민 체감 데이터 이용 활성화  - (내용) 도내 공공기관 협업 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 자문을 통한 데이터 활용 우수 아이디어 창업 지원  - (성과) 창업 아이디어 발굴 6건, 데이터 전문가 양성 26명, 지역현안 해결 지원 2건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 V

### **FAO**

#### FAQ 1

#### 근거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all.data.go.kr > 기관 실무/업무담당자 로그인 > 기관 시스템 연계 > 운영실태평가 > 평가시스템으로 이동으로 접속하여 지표별 실적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시스템 이용가이드는 평가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FAQ 2

# 9월말 실적 등록 이후에 근거자료를 보완할 수 있나요?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원칙적으로 근거자료를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의 1차 평가 이후 기관의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정량적 평가에 한해서만 점수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할 계획입니다.

#### FAQ 3

#### 평가점수는 어떻게 활용 되나요?

-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5점),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5점), <mark>공공기관</mark> 경영평가(0.5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0.3점\*\*)에 반영됩니다.
  - \* '공공데이터 공유·개방·활용'(0.5점),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노력 및 성과'(0.3점)

#### FAQ 4

#### N/A 처리항목의 점수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N/A는 해당 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의 총 배점 대비 획득점수의 비율로 환산합니다.
  - (예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2-3) 지표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내역(3점)이 없는 경우, N/A 등급을 획득하고 다음과 같이 환산 점수로 통보됩니다.

## 첨부1 2023년 평가대상 기관 목록

기관	기관명	비고
유형	기단 6	0175
중앙 행정 기관 (45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mark>국가보훈부,</mark>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20개)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질병관리청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6개)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광역 <b>쟈턴체</b> (17개)	<mark>강원특별자치도</mark> ,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기초 <b>자氏</b> 制 (226개)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군위군,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공공데이터법, 정부업무 평가법

기관		
유형	기관명	비고
기초 <b>자년체</b> (226개)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라북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공공데이터법, 정부업무 평가법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산업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공기업 (13개)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공 <b>군 만</b> (392개)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개) (11개) (12 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법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개) (대)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기관		
-	기관명	비고
유형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다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한국소리보지지호의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 만 (392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조실)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이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이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이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과기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관	기관명 비고				
유형		비고			
공장 만 (392개)	7타공기만 (259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어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문연구원, 한국제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학의학연구원, 한국학생문연구원, 한국학의학연구원, 한국학생무선구원, 한국학의학연구원, 한국학생무선구원, 한국학생육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정부대학교병원, 청사급대학교병원, 저구대학교병원, 大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청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청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망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명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대한건설기계안전과리원, 재단법인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자방발(주), 코레일네트워스(주), 코레일관자방발(주), 코레일대트워스(주), 코레일라장개발(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항국부자공사 (공사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항국수학원학금융원, 재단법인축산환경관리원, 한국무출업증병,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학원회, 예출경정지원센터, 예술의전당, 재단법인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화에술교육진흥원, 한국도학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화에술교육진흥원, 한국도학에술위원회,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관		비고	
유형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공간만 (392개)	(名 7手Bみ) (2597H) (4 (名 (名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정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목지본)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복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미료가광평가인증원,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목지인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전의료인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자합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자인진흥원, 한국사이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자인진흥원, 한국서업지흥원, 한국사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대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제당권의료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제목가전관리원, 한국에너지의술편, 한국에너지의술면, 한국에는 한국제목가원과, 한국에는 한국전관리원, 한국당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생인권진흥원 원, 한국생소년활동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생인권진흥원 원고부) 한국국제교류재단증기부) (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식회사공영홈쇼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해양구상원, 한국어생인권진흥원 왕국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연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연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자학기술원, 한국해양자학기술원, 한국해양자학기술원, 한국해양자학기술원, 한국해양자학기술원, 한국해양자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조등임원, 작국립한당정통지원자단환경산업진흥주식회사, 무소권매점자관리공사, 수도권매점자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식회사, 무소권매점자관리공사, 수무권매점자관리공사, 수무권매점자관리공사, 수무권매점자관리공사, 수무권매점자관리공사, 수무권매점자관리공사, 수무권매점자관리공사,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관	기관명	비고
유형 왕 (392개)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기상청) APEC기후센터,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토화정)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토화정)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토화정)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 공기업 (46개) (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 대전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공사·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대전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환경시설공사·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산환경, 대구공공시설,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공공데이터법, 지방공기업법
교육 행장 <b>만</b> (17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데이터법

# 첨부2 전년대비 지표 변경사항

## ※ '23년 주요 개선사항: 파란색 표기

영역	2022년 평가지표						
07	지표명						
관리 체계	①-1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 노력	5 ※ 기초 ·기타 공공 (7)					
(7)	①-2 교육훈련 시행참여 실적						
※ 기초 ·기타	①-2-1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2 ※ 기초					
· 공공 (11)	①-2-2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 교육 참여	·기타 공공 (4)					
	②-1 보유관리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8					
7IIHL	②-2 메타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5					
개방 (38)	②-3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기타공공기관 제외	10					
※ 기타	②-4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3					
<del>공공</del> (28)	②-5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6					
	②-6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6					
	③-1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기타공공기관 제외	8 ※기초 (7)					
활 <del>용</del> (20)	③-2 <del>공공</del> 데이터 <del>활용</del> 지원 노력 및 실적 ※기타공공기관 제외	6 ※기초					
※ 기초 (16) 기타 공공	③-3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3					
(6)	34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 수렴	3					
품질 (35)	④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및 데이터 값 관리	35					
기 타	⑤-1 직접제공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미등록 ⑤-2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미수행 ⑤-3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감점 (-3)					

	영역	2023년 평가지표 개선							
	89	지표명	방식	배점					
	관리 체계 (7)	①-1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 노력	정성	5 ※기초 ·공공(지방) 기타 공공/교육 행정(7)					
	※ 기초·공공 (지방) (11) 기타 공공· 교육 행정(13)	①-2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정량	2 ※기초·					
		①-3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 교육 참여	정량	공공 (지방)(4) 기타·교육 행정(6)					
		로 이관							
		②-1 메타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교육행정기관 제외	정량	10					
	개방 (35)	②-2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제외	정성	10					
>	※기타공공 (29) 교육 행정 (15)	②-3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정량	3 ※기타 <del>공공</del> (5)					
		②-4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정량	6 ※기타공공 (7)					
		②-5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정량	6 ※기타공공 (7)					
	<b>≒</b> LO	③-1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제외	정성	8 ※기초· <del>공공</del> (지방)(7)					
	활용 (23) ※ 소공방) (19) 기타공공 (10) 교육행정	③-2 <mark>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노력 및 실적</mark> ※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 제외	정성	7 ※기초·공공 (지방)(4)					
		③-3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정량	4 ※기타공공 (5) 교육행정 (2)					
		③-4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 수렴	정량	4 ※기타공공· 교육 행정 (5)					
	품질 (35) ※ 기타공공 (28) 교육행정 (20)	④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및 데이터 값 관리	정량	35 ※ 기타공공 (28) 교육행정 (20)					
	기타	⑤-1 직접제공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미개방 ⑤-2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량	감점 (-1)					
	<b>71™</b>	3-2 년년 중국규지시키는 대중기년 정비 미수행 ⑤-3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00	감점 (-1/건당)					

# 첨부3 평가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영역	지표명	작성양식	제출자료 작성양식 제출 증빙자료				
관리 체계 (7) ※ 기초/· 공공 (지방) (11)	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작성양식1	(직접제출) -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표 여부(홈페이지 캡쳐본) - '23년 공공데이터 예산집행 내역 - 공공데이터 전담부서 보유 및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활용 여부 - 데이터 전문 직위 및 관련 학위증, 데이터 관련 자격증,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 증명서(2년 이상), 민간경력 특채 증빙, 전문임기제 다급 이상 및 다급 이상에 준하는 인력 증빙 - 공공데이터 전략 수립 및 기관 현안 과제, 제공 책임관 주재 회의 계획 및 결과보고(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기관장(기초지자체, 기타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부기관장 인정) 주재 이행점검 회의 계획·결과 등 작성양식1에 기재한 내용 증빙				
기타 공공/ 교육 행정 (13)	①-②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없음	(직접제출) - (자체교육)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리 자체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등 교육 일시·참석자·내용·이수시간·수료여부 등 증빙자료),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자료 포함 ※ 의사결정권자 참석 여부 별도 증빙(참석 확인증, 서명 등)				
	①-③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 교육 참여	없음	(자동집계) - (공통교육) 2023년 8월 31일(수) 기준 행안부 제공 공공데이터 이러닝 공통교육 이수 실적 자동집계				
개방 (35)	回-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없음	(자동집계) - (개방이행)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개방검토·개방 완료하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 2023년 9월 30일까지 이행 실적으로 등록·승인 완료된 URL로 확인 - (개방계획) 2023년 8월 31일까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로 별도 개방계획 및 목록구성 등록·승인이 완료된 실적으로 확인				
※ 기타 공공 (29)	回-②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작성양식2	(직접제출) 자체 전수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신규데이터 개방 수요조사 계획 및 실적(타 기관 및 민간 협업 실적), 원천데이터·비정형·비식별화데이터 개방 실적 등 작성양식2에 기재한 내용 증빙(공식 결재 문서, 보고 문서, 사진 등)				
교육 행정	四-③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	없음	(자동집계) 2022년 8월 4일 ~ 2023년 8월 3일까지 접수된 데이터 신청 접수 건으로 공공데이터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서 제공신청 처리내역 집계				
(15)	四-④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없음	(자동집계) <u>2023년 8월 31일(수) 기준</u> 으로 공공데이터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집계				
	四-⑤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없음	(자동집계) <u>2023년 8월 31일(수) 기준</u> 으로 공공데이터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집계				

영역	지표명	제출자료 작성양식 제출 증빙자료			
활용	四-①개방데이터 활용도제고 노력 및실적	작성양식3	(직접제출) 활용 현황 분석 보고서, 활용도 제고 계획 및 결과보고서, 통계성 데이터 등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를 정비한 노력 및 실적, 타 기관 협업 계획 및 결과보고서, 민간 회의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작성양식3에 기재한 내용 증빙(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사진)		
(23) ※ 기초/ 공공 (지방) (19)	Ⅲ-②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노력 및 실적	작성양식4	(직접제출) 활용지원 수요·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민관협력·파트너십 결과, 국민·기업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공공데이터 경진대회(해커톤, 기관보유 데이터 설명회 등),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신규 비즈니스 창출, 사회현안 해결, 디지털 약자를 위한 활용 지원 내역 등 작성양식4에 기재한 내용 증빙(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사진) ※ 유관기관·상위기관 등과의 공동 개최도 가능. 단, 공동 개최 시에는 각 기관의 담당자 참석이 증빙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기타 공공 (10)	四-③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없음	(자동집계) <u>2022년 8월 19일 ~ 2023년 8월 18일 기준</u> 으로 접수된 오류 데이터 신고 및 문의 건 공공데이터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집계		
교육 행정 (7)	□-④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없음	(직접제출) 온라인 설문조사, 간담회·인터뷰·자문, 상시 의견수렴 창구 등 의견수렴 채널 운영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등(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홈페이지 설문조사·SNS 운영·게시판 운영 등 캡쳐본 필수) ※ 기관 보유데이터의 <u>공공데이터포털</u> 개방수요 발굴, 활용개선 등의 의견수렴 활동이 포함되어야 인정(개별기관 자체 포털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개방수요 발굴, 활용개선 등의 의견수렴 활동을 한 경우 불인정)		
	☑-① 직접제공 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 미개방	없음	(자동집계) <u>2022년 8월 4일 ~ 2023년 8월 3일까지</u> 제공 신청 접수 건 중 2023년 8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직접 제공 처리 완료한 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 개방여부 등 공공데이터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집계		
기타 (감점)	☑-②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미수행	없음	( <b>자동집계</b> ) 행정안전부 보유자료로 집계		
	☑-③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없음	<b>(자동집계)</b> 행정안전부 보유자료로 집계		

- ※ 자료제출시 양식의 청색, 이탤릭체 등 참고표는 삭제하여 제출
-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표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소속기관 내용을 반드시 포함
-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자동 집계되는 지표는 평가대상 기관의 실적 제출 불필요
- ※ 불인정 사례: 계획 및 결과 보고가 공식자료(결재 및 보고 문서 등)가 아니거나 계획만 제출하고 결과 보고가 없는 경우, 평가 기간 내 실적으로 확인이 불가 한 경우(날짜 미확인 시 불인정)

# 첨부4

# 정성평가 작성양식

# [기관명]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지표□-①]

- \* (작성 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4장 이내 작성(별첨 제외)
- \* (실적 등록) 본 실적 양식과 추가 증빙자료는 첨부파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시스템'에 등록
- \* (파일 구성) 평가 효율을 위해 지표별 실적보고서 파일 1개와 별침 증빙 파일 1개(증빙이 다수일 경우라도 증빙 건별로 파일을 나누지 말고 가능한 1개의 파일 내에 구분하여 작성)로 제출

# □ 개요

ㅇ 기관 유형에 맞는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등 기재

-

#### □ 추진 내용

ㅇ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여부 기재(평가착안사항 ①)

-

○ '23년 공공데이터 예산집행 내역 기재(평가착안사항 ②)

\_

○ 기관(본부 기준)내 공공데이터 전담 부서·인력 보유 및 해당인력의 공공데이터 업무 전담수행 여부 기재(평가착안사항 ③)

\_

\* (중앙부처) 기관별 직제시행규칙(부서명), (지자체)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그 외 기관) 조직도 및 직제규정, (전체 기관 공통) 해당부서 업무분장표(내부 결제문서 포함) ○ 조직의 핵심가치 및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기관 공공데이터 전략 수립 여부 기재(평가착안사항 ④)

\_

- 기관의 공공데이터 추진 리더십(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현업부서 참여 및 인식 전환 촉진 등) 확보를 위한 기관장 및 제공 책임관(주재 회의 개최, 성과 점검, 계획·실적 보고, 지시사항의 이행 노력 등)·실무담당자의 노력 기재(평가착안사항 ⑤, ⑥)
- \* 기초자치단체·기타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에 한해 부기관장의 추진 의지 인정

#### □ 성과

- ㅇ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 노력을 통해 달성한 성과 기재
  - (정량)
  - (정성)

#### □ 추가 내용 기재

\* 평가 착안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 사례 및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

Ò

# [기관명] 신규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지표Ш-2]

- \* (작성 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mark>5장 이내 작성(별첨 제외)</mark>
- \* (실적 등록) 본 실적 양식과 추가 증빙자료는 첨부파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시스템'에 등록
- \* (파일 구성) 평가 효율을 위해 지표별 실적보고서 파일 1개와 별첨 증빙 파일 1개(증빙이 다수일 경우라도 증빙 건별로 파일을 나누지 말고 가능한 1개의 파일 내에 구분하여 작성)로 제출
- \* 기타공공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은 작성 불필요

#### □ 개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활용성 높고 내용적으로 충실한 신규데이터 발굴 노력 및 개방 실적 등 기재

# □ 추진 내용

- \*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23~'25) 목록 이외에, 실적 기간 내 신규로 개방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별첨 작성
- 기관의 데이터 분류 체계 및 보유 데이터 현황 파악을 위한 자체 전수조사 시행 여부 등 기재(평가착안사항 <추진노력>①)

○ 국민·기업 등 사용자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타기관(공공, 민간)간 상호협력 등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활용성 있는 신규 개방데이터 발굴·개방 노력 및 실적 기재(평가착안사항 <추진노력>②)

\* 선호하는 개방 데이터목록, 데이터목록 구성 항목 및 분류(카테고리)·세분화 정도, 개방 형태(원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비식별화데이터, 오픈포맷 등) 등 실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반영

○ 현황 파악→수요반영→계획수립→시행 추진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한 신규데이터 발굴 및 개방이행 노력(평가착안사항 <추진노력>③)

\_

- 기관 특성을 반영한 활용 가치가 높고 내용적으로 충실한<sup>\*</sup> 신규데이터 개방 실적*(평가착안사항 <개방 실적·성과>①*)
- \* 데이터 목록별 충분한 데이터 항목을 포함하고 최대한 세분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

\_

- o 지역·사회현안\* 데이터,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민간 간 융합 데이터, 신규 비정형 데이터(음성, 영상, 이미지 등) 개방 노력 등 기재(평가착안사항 <개방 실적·성과>②)
- \* 전염병, 미세먼지, 저출산, 디지털 격차문제 등 개방데이터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 지원

\_

○ 데이터 추이 분석, 예측 등에 요구되는 시계열 서비스의 발굴 및 오픈 API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실적(평가착안사항 <개방 실적·성과>③)

\_

○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 분류 보유 목록을 개방(비식별화 등) 및 부분 개방으로 변경·개방 추진한 실적 등 기재(평가착안사항 <개방 실적·성과>④)

\_

○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을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적극적 참여노력\*, 개방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평가착안사항 <개방 실적·성과>⑤)

\_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과제 신청,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간담회 및 설명회 참여 등

○ (중앙행정기관만 해당)「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의 중점데이터(디플정 과제 추진에 따른 주요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공유·개방을 저해하는 개별법령 정비 노력·실적(평가착안사항 <추진노력>④, <개방 실적·성과>⑥)

\_

○ (공기업·준정부기관만 해당) 공공기관의 신규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TF'(기재부, 데이터 관련 부처, 민간전문가 참여)에 협조한 실적(평가착안사항 <개방 실적·성과>②)

\_

○ 신규데이터 발굴·개방 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노력 및 실적(평가착안사항 <추진노력>⑤, <개방 실적·성과>⑧)

\_

## □ 성과

- ㅇ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을 통해 달성한 성과 기재
  - (정량)
  - (정성)

# □ 추가 내용 기재

\* 평가 착안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 사례 및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

Ò

# 별첨

#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세부내용 [지표Ш-2]

\*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23~"25년) 목록 이외에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시점까지 신규로 개방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만 작성

4 171	신규 개방 데이터명 기	개방시점 <sup>*</sup>	신규 개방 데이터의 중요성 ※ 사용자 수요반영, 산업적 활용가치, 데이터 충실성 등 설명	제공형태 (v 표기)		데이터 유형(v 표기)			
순번				파일	API	원천 데이터	통계성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비식별 화 데이터
1		23.03.06		٧	V		V	V	
2		22.09.21		V		V			V
								V	V
							٧		

<sup>\*</sup> (개방시점)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시점 / (제공형태) 형태에 따라 복수 표기( $\lor$ ) 가능 /(데이터 유형) 해당유형에 따라 복수 표기( $\lor$ ) 가능

## [기관명]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지표Ш-①]

- \* (작성 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5장 이내 작성(별첨 제외)
- \* (실적 등록) 본 실적 양식과 추가 증빙자료는 첨부파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시스템'에 등록
- \* (파일 구성) 평가 효율을 위해 지표별 실적보고서 파일 1개와 별첨 증빙 파일 1개(증빙이 다수일 경우라도 증빙 건별로 파일을 나누지 말고 가능한 1개의 파일 내에 구분하여 작성)로 제출
- \* 기타공공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은 작성 불필요

## □ 개요

ㅇ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 기재

#### □ 추진 내용

- 통계성 데이터 등 활용도가 낮은 개방데이터 원인 분석 및 개선·정비 방안 도출 등 노력 기재(평가착안사항 ①)
- 통계성 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변경하거나 데이터별 항목(칼럼, 레코드)을 추가하여 데이터 충실성을 보완하거나 분류(카테고리) 세분화, 데이터 오류개선 등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비 노력 기재(평가착안사항 ②)
-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타 기관과 상호 간 협력한(데이터 공유, 협업 과제 발굴 등) 노력 기재(평가착안사항 ③)

-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체 계획 수립 내용(데이터 활용현황 분석 및 수요자 개선의견\* 반영 계획 등) 기재(평가착안사항 ④)
- \* 소상공인·노약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 민간기업 및 데이터 전문가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의견수렴(간담회 등) 등
- o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및 대국민 홍보 노력을 통한 데이터 활용도, 만족도 등의 개선 실적 및 성과 기재(평가착안사항 ⑤)
- ※ 홈페이지·SNS 등에 관련 내용 게시 및 언론보드

□ 성과

- ㅇ 개방된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통해 달성한 성과 기재
  - (정량)
  - (정성)
- □ 추가 내용 기재
  - \* 평가 착안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 사례 및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

Ò

# [기관명]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노력 및 실적 [지표Ш-2]

- \* (작성 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4장 이내 작성(별첨 제외)
- \* (실적 등록) 본 실적 양식과 추가 증빙자료는 첨부파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시스템'에 등록
- \* (파일 구성) 평가 효율을 위해 지표별 실적보고서 파일 1개와 별첨 증빙 파일 1개(증빙이 다수일 경우라도 증빙 건별로 파일을 나누지 말고 가능한 1개의 파일 내에 구분하여 작성)로 제출
- \* 기타공공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은 작성 불필요

## □ 개요

o 국민·기업 등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력 등 기재

## □ 추진 내용

-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수요 파악, 활용지원계획 수립 및 실제 이행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한 지원 노력\*을 기재(평가착안사항 ①)
- \* 기업 간담회·인터뷰·설문조사 등을 통한 활용지원 수요 파악·계획 반영, 민관협력·파트너십 운영, 디지털 약자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기업 성장지원 등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관련 각종 노력

-

- 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장려를 위해 실제 지원한 각종 노력(경진대회 및 설명회 개최, 컨설팅 수행 등) 기재(평가착안사항 ②)
- ※ 유관기관·상위기관 등과의 공동 개최도 가능. 단, 공동 개최 시에는 각 기관의 담당자 참석이 증빙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o 기관이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지원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 창출, 리빙랩 등을 통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의 실적 기재(평가착안사항 ③)

\_

○ 활용지원 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노력 및 실적 기재(평가착안사항 ④)

\_

# □ 성과

- ㅇ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노력을 통해 달성한 성과 기재
  - (정량)
  - (정성)

# □ 추가 내용 기재

\* 평가 착안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 사례 및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

Ò